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

2022. 12.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

2022. 12.

목 차

○ 실무 가이드북 구성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5
- 제1조(목적)	7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10
- 제3조(정의)	13
- 제4조(계약문서) /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16
- 제5조(통지)	23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26
- 제7조(채권양도)	34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37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45
-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52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5
-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62
-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9
-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73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79
- 제16조(검사)	85
- 제17조(일반적 손해)	89
-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94
-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106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110
-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121
-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125
-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8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137
-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144
-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151
-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156
-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61
○ (부록) 유권해석 모음집	165

실무 가이드북 구성



실무 가이드북 구성

-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은 ① 조문별일대일 대응형 서술식 해설과 ② 실무적 참조가 될 수 있는 유의점, 계약당사자별 현안과 예제 등이 제시되는 지침식 해설 형태로 구성됨.
- 목적, 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등 총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문별 해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계약 실무 활용 절차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조문에 대해 별도로 유권해석을 모아 부록 형태로 제시함.
 -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과 같이 조문별 해설 속성이 동일한 조문의 경우 통합하여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제시
 -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석은 조문별 제정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사례)로서 계약상 쟁점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실무 적용 시 구체적 쟁점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

<실무 가이드북 구성 표>

구분	세부구분	내용
1. 조문별 해설	(1) 제정 목적 및 취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괄적인 제정 목적 및 취지 설명
	(2) 조문별 해설	각 조문별 해설 제시
2.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1) 관련 조항	'(2) 적용 필요상황'과 관련하여 본 표준계약서에서 관련된 조항 제시
	(2) 적용 필요상황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시 제시
	(3) 해석상 주안점	'(2) 적용 필요상황'와 연계하여 각 조문별 제정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석상 중점이 되는 사항 제시
	(4) 관련 유의사항	'(3) 해석상 주안점'과 연계하여 계약 이전 단계부터 계약 이후 단계까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제시
	(5) 관련 법적근거	본 표준계약서 내용과 연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공 계약법령 제시
3. 계약 실무 활용 절차	계약 실무 활용 절차	계약 실무 절차 단계별로 계약당사자 간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 및 관련 계약문서 제시
4. 유권해석 모음집	유권해석	주요 쟁점이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유권 해석을 모아 부록 형태로 제시

<표준계약서 조문 구성>

조	제목	조	제목	조	제목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8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16조	검사	제23조의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9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17조	일반적 손해	제23조의3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조	정의	제10조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제18조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24조	용역의 정지 등
제4조	계약문서	제11조	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제24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제4조의2	계약의 내용 및 기간	제12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20조	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2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5조	통지	제1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	대가의 지급 등	제26조	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제6조	계약금액 확정 등	제14조	지체상금 부과 등	제22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7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 담보 등
제7조	채권양도	제15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2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 함)의 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 기본적 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과 계약상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참조 법령체계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현안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국제회의, 해당 산업과 용역계약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통해 공정한 계약 기반을 규정하기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3항 • 제3조(정의) 제1호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본 표준계약서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이 본 표준계약서를 계약문서로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자 발주기관은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이행 대상인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국제회의 인정 요건*에 미달하여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용역이 아니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함.</p> <p>*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등</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MICE 행사 건수의 약 92%(2020년 기준)에 달하는 회의용역 중 대내외적으로 MICE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주도하는 국제회의용역을 기준으로 표준적 계약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설정하였으나, 동일한 계약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MICE 분야의 다양한 '국내회의' 및 '기타행사대행용역'에도 적용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본 표준계약서의 일반적 제정 목적을 밝히는 제1조에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명목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요건 상에 따른 국제회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 의미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은 국제회의 개최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임. • 특히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 구현을 위해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3항에서 '국내회의' 또는 '기타행사대행용역'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이 국제회의에 한정되는 용역이 아닌 국제회의로 대표되는 통칭 MICE 산업 전 분야의 용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면, 조달청 업종코드 '5720. 국제회의기획업'과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그리고 '9999. 기타자유업종'으로 입찰 공고되는 용역 중 행사의 성격을 띠는 용역에 본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해석은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계약상 용어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 제3조 제1호에서 '국제회의용역'을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업과 관련한 용역으로 포괄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괄하여 현행 관련 법률체계에서 '국제회의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 표준계약서 제3조가 유일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제3조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 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정의)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적용 대상 용역 유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용역 유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주요 계약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용역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개최 등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한 용역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 기타 일반적인 국내회의 및 기타 행사대행용역으로서 본 표준계약서 적용이 적합한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2	적용 대상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제3조의 '국제회의용역' 정의에 따라 상기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용역으로서 적용 가능 • 관련 법령이 다르더라도 통칭 MICE 산업 분야에 속하는 행사대행용역 등에도 포괄적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본 계약서에 제4조의 계약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제4조에 따라 첨부된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이 상충할 때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국가계약 일반조건"이라 함)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지방계약 일반조건"이라 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서는 제1조에 따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회의 또는 기타 행사대행 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있어 본 표준계약서의 법률상 효력과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간 효력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복수의 계약문서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계약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수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회의, 기타행사대행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기준으로서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계약 일반사항과 용역계약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3항 :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한 국내회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국제회의도 포함), 기타행사대행용역 등 MICE 분야의 다양한 용역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계약문서 상호 간 효력 우선순위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1항~제2항 제4조(계약문서)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문서 간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A기업은 OO발주기관과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기관에서 내부 일정을 사유로 일부 역무를 조기 착수 및 완료하도록 연장근로를 A기업에게 요구함.</p> <p>- 그러나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 상 명시된 '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용역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 청구를 거부</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문서인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보유함. 따라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 다른 계약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적 효력을 통해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사안 및 관련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계약문서 상호 간의 효력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상호 충돌 및 모순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문서로 제시된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간 모순 또는 상호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표준계약서에 우선적으로 효력을 부여함. -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항에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본 표준계약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용역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정한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공공계약법령 등의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당해 용역의 계약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계약 특수조건 성격인 바, 제4조의 계약문서와 상충하거나 상호보완적 해석에 있어 최우선 순위의 효력을 부여함.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체계상 효력 우선순위는 적법성을 전제로 '계약 특수조건 ← 계약 일반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법률'의 순서이므로 계약 특수조건 성격인 본 표준계약서는 다른 계약문서보다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적용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서 연장근로 실행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를 제외하고는 그 실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요구한 연장근로는 계약문서 상 조건과 별개로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계약서의 작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문서 구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여부 * 본 표준계약서에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문서도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2	계약문서 내용 적합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문서 상호 간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계약 및 과업수행 조건 등 확인 및 점검 •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모순 및 충돌하는 요소는 사전 삭제 및 보완하여 상위 계약법령 및 규정과 정합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3	계약문서 효력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문서 상호 간 적법성 및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으로 효력 인정 • 계약문서 간 동일, 유사, 모순 및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병존하는 경우 본 표준계약서 내 관련 또는 유사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효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제3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제회의용역"이란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 산업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 체결 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 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방법, 절차, 인력투입, 예산사용 등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예산(사업비) 사용 계획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10. "사후정산"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 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수월성 보장을 위해 대가지급 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사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행사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현장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본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원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협력업체"라 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15. "부당한 인력파견"이라 함은 국제회의용역이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행사 및 현장인력이 행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발주기관의 사무실 또는 지정장소 등에서 발주기관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관여 등 관리 아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모든 형태(행사인력 전부의 근무지 이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파견 등)의 인력투입을 말한다.
16. "분리발주"라 함은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한 과업으로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 진행소요를 유발하는 집행방식을 말한다.

* 정오 : 예상집행내역 → 예산집행내역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3조는 다양한 유형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률, 계약 관례 및 실무상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상 명확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발주기관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계약법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으로 상이하다.
- 이로 인해 발주기관별 계약규정 또는 개별 국제회의용역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법령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상이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3조 : 국제회의용역은 공공부문 일반용역으로 발주기관 유형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달리 적용받게 되므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공공계약법령 등의 적용 원칙을 제시하였다.
- 제3조는 국제회의용역 등에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의 규정, 계약이행 및 관리에 있어 주요하게 언급되는 16개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 ⇒ 제1호~제3호 : 국제회의용역과 계약당사자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미 제시
 - ⇒ 제4호~제8호 : 국제회의용역 과업내용과 관련한 각 문서의 의미 제시
 - ⇒ 제9호 :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용역 이행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제시
 - ⇒ 제10호 :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 이후 정산하는 행위에 대한 계약법령 상의 정의 명시
 - ⇒ 제11호~제12호 :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한 투입인력을 행사기획,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과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기고용 인력으로 구분하여 제시
 - ⇒ 제13호~제14호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분야별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바, 그 법률적 계약관계로서 하도급과 이러한 하도급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용역에서 관리 특성을 고려한 협력업체 개념 제시
 - ⇒ 제15호 : 발주기관에 의한 위법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는 내용 제시
 - ⇒ 제16호 :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 내용 중 별도로 선행 집행한 과업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점 제시

☞ 제3조(정의)의 경우 조문 특성상 별도의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및 '계약 실무 활용 절차'를 제공하지 않음.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계약서는 별지 1에 따르며, 산출내역서는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과 본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특수조건이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상충할 때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중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을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리발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된 과업을 본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단, 제6조에 따른 계약금액에 분리발주한 과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포함하고 이를 산출내역서에 별도 집행비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정오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4조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계약문서의 상호보완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규정 위반과 상호 모순적 이행조건 등이 동시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따라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공공부문 일반용역계약에서 계약서에 부속되는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제2조와 연계하여 효력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함으로써 공공계약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특약 등이 계약문서 내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제4조의2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이행 내용의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계약내용의 확정에 있어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 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를 대가 없이 지원토록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분리 발주 과업과 관련한 과업 내용 확정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4조 제1항 : 계약서에 부속되는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를 규정하였다.
- 제4조 제2항 : 제2조와 연계하여 계약문서로서 본 표준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계약문서 목록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계약조건 모두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함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 복수의 문서에 기존 발주 및 계약관리 관례 등에 따른 부당특약적 조건을 추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제4조 제3항 :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당사자 간 특수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제4조 제4항 :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통지된 문서 역시 계약문서로서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4조의2 제1항~제2항 : 최초 과업 내용은 과업내용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기술협상서와 가격협상서가 과업 내용 및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제4조의2 제3항 : 본 표준계약서 제2조 제16호에 따른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을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과업 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가를 당해 용역의 과업 내용에 대한 대가와 분리하여 편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부당특약에 대한 효력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계약문서) 제2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특수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계약체결 당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해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최저임금 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변경 절차가 아닌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것을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공공부문 일반용역은 공공계약법령 등에 명확한 규정한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관례 등에 따른 불공정 요건을 별도 특수조건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예시와 같이 기준노임단가 등의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계약당사자 임의로 사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계약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계약법도 2019년 11월 제5조 계약의 원칙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국제회의용역 또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관련 유의 사항	-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통지문서에 대한 효력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계약문서) 제4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통지된 문서의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OO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A기업에게 당초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중 야외 전시회를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고, A기업은 그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철수 후 후속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통지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급작스럽게 전시회 재진행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고 관련 시설 및 장비는 현재 시점에서 렌탈 및 리스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행이 어렵다고 통지함. - OO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에 대한 통지보다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가 우선 되므로 당초 과업내용서에 따라 전시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통지'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함. 이는 계약문서의 내용과 달리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 변경 역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면 당초 계약문서의 내용과 별개로 통지된 내용이 새로운 과업 내용으로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예시와 같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통지를 통해 취소한 당초 과업 내용의 우선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는 추후 문서로 보완된 경우에만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통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과업 내용 및 기간 확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A기업은 OO발주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에서 기술제안서 내용이 과업 내용서의 요구 과업보다 전체 행사 진행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주기관과 A기업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A기업이 제안한 내용으로 대체하되, 기존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기관과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행할 것을 합의하고 기술협상서를 작성함. - 그러나 기술협상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체되면서 당초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기간보다 착수일자가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점에 공개한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서 내용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음. 특히, 기존 과업내용서 대비 우월한 대안의 제시나 보완적 수행방안의 경우 행사 품질 제고와 용역의 성공적 이행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과업 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발주기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일 것임. 이러한 추가적인 과업 내용과 대안적 수행 방법 등을 당초의 과업내용서와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업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절차는 기술협상을 통해 기술협상서에 반영하는 것임. 또한, 기술협상의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과업내용의 수행과 제안내용의 이행에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가격협상서에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한편 예시1과 같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계약기간보다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계약 체결 하는 일정이 지연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된 총 계약기간에 맞추어 착수 및 완료 일정 등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체결된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초 과업 내용서에 따르나, 만약 기술협상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정, 변경, 추가된다면 기술협상서 등 문서로 확정하여야 추후 기본과업과 추가과업 내용 판단 시에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3. 용어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④ 분리발주되어 집행된 과업 내용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발주 예정 또는 기 분리발주되어 집행된 과업에 대해 대가 없이 관련 업무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입찰 시점 과업내용서에 당해 용역과 관련한 회의장 대관 및 항공권 예약은 발주기관의 별도 발주를 통해 집행하되, 회의 개최 시점까지 행사장 관리와 해외 참석자의 항공권에 대한 유류 할증료, 일정 변경에 따른 재예약 등 지원 업무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및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별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함.</p> <p>-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해당 과업내용을 제외하거나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와 동 기준 제16조에 따르면, 입찰 단계 또는 과업 이행 중 동일 용역 내의 특정 과업을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볼 수 있음. - 상기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1. 계약목적물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예산 신청 시점부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일 용역 내의 연계된 역무를 불가피하게 분리하였다면, 분리된 과업과 관련하여 연계된 선·후행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상기 집행기준 제2조의2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무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담당자 등이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나, 불가피할 경우 우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분리발주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문서 구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 여부 본 표준계약서에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문서도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2	분리발주 과업내용의 계약문서 포함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문서 중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 당해 계약목적물인 국제회의용역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된 과업 내용 포함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3	분리발주 과업내용에 대한 별도 대가 반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내용이 당해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내역서에 별도 비용(대가) 반영 여부 확인 산출내역서 상 별도 비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하여 계약 진행 <p>* 계약 이후 분리발주하여 집행된 과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역무를 당해 용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제5조(통지) ① 계약당사자 간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단, 긴급한 통지 및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계약당사자 간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통지의 내용이 전달 및 교환된 경우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전자우편의 경우 이메일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통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통지에 따른 과업의 변경, 추가 등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의사소통 과정 및 결과로서 계약 변경 내용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실질적인 계약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제5조는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가정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공공(국가 또는 지방)계약임에도 실질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당초 계약 내용이 구두상 요구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제2항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특별한 원칙을 부여하였다. 특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공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하더라도 상호 간 합의된 문서를 통하여야만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형식적 제한을 강화하였다.
- 제3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요인(과업 변경, 계약 금액 조정, 기타 협의사항)과 효력 기준일을 공식화하여 추후 대가 산정 또는 분쟁 시 권리와 의무부담 관련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통지방법별 효력 발생 여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통지)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특수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초 30개 설치를 계획한 홍보부스를 15개로 줄일 것을 구두로 통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기존 과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축소되는 바 구두 통보사항을 다음날까지 문서(발주기관의 공문 등)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즉시 설치된 부스 중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공문 대신 전자우편(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회신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통지에 따라 확정, 추가, 삭제 및 조정한 모든 과업 관련 내용은 계약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함. 따라서 예시와 같이 구두로 업무 지시 후 이메일로 보완되어 통지된 경우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부스 축소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구두로 요청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도 구두에 의한 지시, 통보 등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로 그 사실을 명확히 확정토록 하고 있음. 또한, 부스 축소 조정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메일로 통보한 날이 아닌 구두로 지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한 날로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에 따라 이메일로 통지하는 내용 역시 '구두 통보 후 문서로 보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긴급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공문 수신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문서로 추후 보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근거로서 활용 할 수 있음. 특히, 이메일로 통지받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공식적인 사업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된 내용일 경우에만 추후 효력 시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시 통지를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 이메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통지 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는 담당자가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지시 및 통보 - 이행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발주기관 공문)로 통지 - 긴급한 사안으로서 구두 통지와 동시에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반드시 문서로 보완 * 문서로 보완요청 시 전화 등을 통한 구두도 가능하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추후 보다 명확한 근거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2	통지 사실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두에 의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통보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므로 문서 수신일로 통지 사실 확정됨. 단, 긴급한 사안으로서 구두 통지가 이루어지고 계약상대자가 즉시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휘하나, 문서로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확정 필요 구두가 아닌 계약당사자 간 계약서상에 명시한 이메일로 통지한 사항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통지 사실 확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3	확정된 통지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절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두 통보 후 문서로 보완하였거나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모두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기존 계약문서의 내용과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나, 본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절차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 진행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①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체결시점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본과업에 대한 지급대가를 총액으로 확정하는 통칭 '총액확정계약'으로서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계상율과 계상금액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발주기관은 제1항과 달리 당해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계약금액의 일부만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용역 관련 수익사업(유료 등록비용 부과, 부스,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계약금액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하는 지출항목 또는 계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⑤ 발주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정오 : 제3항 → 제4항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6조는 본 계약이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 내용에 상응한 대가를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인 상황에서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충당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계약금액을 불확정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또한,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용역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이행 여건을 확보토록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계약이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내용과 그에 따른 대가가 총액으로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임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 등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용 및 이윤율의 법정 계상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설정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계상율과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제3항 : 발주기관이 국제회의용역 등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과업내용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수익사업(당해 용역과 관련된 입장권, 부스설치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확정된 계약금액에 반영된 특정 비목에 대하여 협찬, 기부 등을 충당토록 하고 당초 배정된 예산(산출내역서 반영분)을 추가 과업 수행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제4항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수월성을 위해 확정된 계약금액 중 최대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 * 선금의무지급률 : 계약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40%, 10억 원 이상인 경우 30%
- 제5항 : 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에 제4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계약금액 총액 확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 총액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적용하는 경우 ☑ 예시 2) 과업 예산의 일부에 대해 발주기관이 편의적으로 정산을 하고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div>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체결 대상 국제회의용역 등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기부, 협찬, 부스 판매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3) 기술협상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이 가격협상 단계에서 계약금액 총액 500백만원 중 70%인 350백만원만 확정하여 지급하고, 30%에 해당하는 150백만원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전시회 부스를 판매한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면서 산출내역서에는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약 요구하는 경우 ☑ 예시 4) 300백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식음료비 35백만 원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 충당하고, 할당된 금액은 추가 전시회에 개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확정은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를 포함하여 계약당사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와 이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확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다시 말해 예정가격의 결정된다는 것은 당해 입찰의 계약사항(내용)에 대해 총액이 '확정' 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에서 요구하는 과업내용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 전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이를 통해 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부당한 부담 요구, 정상적 과업을 이행하고도 계약금액 내 비용이 할당된 특정 비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대가없는 과업 수행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계약금액에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등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역시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특정 세부 의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산출내역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추가 과업 수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후원 등을 통한 비용 충당을 요구하는 것은 대가 없는 과업 요구에 해당하여 부당특약이 될 수 있음.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입찰 시 사업예산 부족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기부, 협찬 및 부스 판매 등으로 충당토록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인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p>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산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81조(개산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	--

②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하향 설정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PCO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통합하여 5%만 계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기술협상 후 가격협상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순원가의 8%)와 이윤율(순원가+일반관리비의 10%)을 하향 조정하여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3)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산정 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시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계산기준 상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계상 시 1)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6/100)과 구분되어 2%p 높은 8/100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2) 2015년 개정 이전 5/100로 설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율을 3%p 상향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비목을 임의적으로 제외하거나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관리비는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순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 특정 비목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계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입찰 참가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명확히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제안서의 과업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집행 비목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추후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가격협상 시 명확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일반관리비 등)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3조(예산산출내역서 작성)

③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 지급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 없이 용역 이행 완료 후 일괄 지급하거나 '선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1) 발주기관인 OO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이 계약금액 200백만 원의 50%를 선금금으로 지급요청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효과적인 용역 수행 및 진도관리를 위하여 선금 30%, 중도금 50%, 잔금 20%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서는 물품, 용역 및 공사별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무적인 선금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사항임.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상황의 선금 지급 요청은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상 의무 지급률이 50%로 설정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의무 지급률 이하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지급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금과 개산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 사용)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④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5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지급계획서에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인 OO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이 계약금액 500백만 원의 50%인 250백만 원에 대한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행계획서(용역착수계획서 등)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 상 A기업이 직접 집행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35%로, 무대설치와 방송 및 음향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협력업체) B의 지분을 15%에 대한 선금 지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기관이 먼저 지급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절차임. 계약상대자와 수급사업자(협력업체)가 역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을 범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무대, 영상, 조명, 음향, 통번역, 보안(경비) 등 다수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금 및 선금 역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요청 시 선금지급계획서 상 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안정적 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선금 지급 내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를 통해 '발주자-원사업자(계약상대자)-수급사업자(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 금액의 확정과 선금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운영 여력이 제한되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도 보호하고자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전체 행사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단위 역무와 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게도 계약상대자인 PCO업체 등이 발주기관에게 보장받는 계약금액 확정, 선금 지급 등의 계약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 사용)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금액 및 집행기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확정계약으로서 과업내용 전부에 대한 계약 금액 확정 여부 확인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설정 여부 확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통합하여 'PCO 대행수수료' 등 비공식 비목으로 제시 및 계상율 하향 조정 여부 확인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에 의한 임의적 하향 조정 요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2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사업예산 중 일부 금액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부족분을 협찬, 기부, 부스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3	계약금액 포함 특정 비목에 대한 계약상대자 부담 요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사업예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특정비목(식음료비 등)을 협찬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조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4.	선금 지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 선금 지급 요청(계약상대자 필요 시) 발주기관이 수용하면 최대 계약금액의 70/100 까지 신청 가능 * 용역의 경우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50%), 10억원 미만(40%), 10억원 이상(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내역서
5.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 시 발주기관은 승인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투입인력 및 수행 내역을 고려한 선금지급계획서 제출 여부 확인 계약상대자 직접 집행한 금액을 초과하는 선금을 신청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함하여 재제출토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서 - 인력투입계획서 - 하도급 승인 내역서 - 산출내역서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7조는 계약상대자의 기업 운영 안정성 확보와 자금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채권의 이전에 의한 부실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양도 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계약 모두 계약 조건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또는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상계 처리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대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생하고, 민법 등에 따라 자사에 귀속된 권리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무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청구 권한을 채권으로 하여 변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이후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 적극적인 이행 의지 저하 등으로 용역 및 계약의 정상적 완료가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적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채권의 양도 및 제한 기준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채권양도) 제1항~제2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채권양도 승인을 거절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A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채권을 협력업체인 B기업에게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차입한 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주기관인 OO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음.</p> <p>- OO발주기관은 A기업의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청구 채권을 협력업체 B에게 양도할 경우 20개 이상의 협력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승인하지 않음.</p>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항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절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대금 청구 채권은 제3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구성업체 또는 하도급업체(협력업체)에도 양도 가능하나 예시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협력업체 등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발주기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운용할 경우 이를 사전 공개하여 계약상대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발주기관의 필수적 승인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양도는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채권양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대금 청구채권 양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국제회의용역 관련 대금청구 채권에 대한 제3자 양도가 필요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위한 통지 시행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2	채권양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양도 승인 요청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의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 여부 판단 - 하도급 업체(협력업체)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채권양도 여부 판단 - 부정한 목적으로 불법/위법/부적정 채권양도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채권양도 관련 권리관계 증명 문서
3	채권양도 승인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채권 채무 관계 등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 관계와 같이 전체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일반적 채권 채무 관계 또는 본 용역 관련 대금 지급 관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관계 형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적정성 검토 후 결정 부정한 목적으로 법률적,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 있는 경우 승인 적정성 검토 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채권양도 관련 권리관계 증명 문서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아래 각호의 사유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력투입 및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역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8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의 투입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임의적/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용역 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계약이행은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을 통하여 진행되는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학력, 경력, 자격 및 수행 경험 등이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투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용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적합한 인력으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무리한 인력교체 요구는 정상적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발주기관이 임의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무적, 내부 노무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운영상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국제회의용역은 일반적인 용역과 비교하여 학·경력과 행사 수행 경험을 보유한 행사 인력과 회의 및 행사 현장에서 분야별 소규모 전문용역제공 역량을 확보한 현장인력의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내용의 핵심인 과업 내용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에서 제시한 행사인력과 현장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국제회의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정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발주기관의 과도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인력교체가 가능한 상황을 5가지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 중 제4호의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역 수행 계획 또는 일정표(공정표 등) 상 단계별 주요 결과물의 완성이 지연되거나 정상적 활용이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정도일 때를 말한다. 상기 과정은 최초 인력교체 의사 전달 시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구두 등으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추후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 변경 보고 등 세부 계약관리 절차 이행을 위해 제5조(통지)의 절차에

따라 문서로 보완토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교체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항 : 발주기관이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인력교체 요구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선행토록 하여 원활한 인력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규정하였다.
- 제4항 :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용역 이행이 곤란하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하고자 규정하였다.
- 제5항 : 인력의 투입과 관련한 형태로 본 용역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아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임의 장소에서 특정한 인력을 파견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투입하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회의 및 행사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 및 현장 인력을 상주 투입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전기간 행사 준비, 진행점검, 연락 등에 대한 업무 편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투입인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인력과 관련한 관리·감독 사항 및 귀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행사에 투입된 행사인력 'OOO 대리'가 관람객 A에게 교육받은 안전 수칙에 따라 입장 시간까지 대기해야 함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부상을 당한 후 발주기관에게 요구한 피해보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처리 및 부담할 것을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예시1과 같은 경우 투입인력이 사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교육받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이 명확하므로 계약상대자의 관리 및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투입, 교체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명시된 인력투입계획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당초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인력교체 요청 등을 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3. 계약이행의 감독"

② 투입인력 교체 요구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000 과장이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문의에 공손히 응대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통명스럽게 반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체 요구 ☑ 예시 2) 투입인력 중 '000 대리'와 업무상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 다른 인력으로 교체 요구 ☑ 예시 3) 발주기관이 인력교체 사유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3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000 주임'의 교체 요구 ☑ 예시 4) 전시 분야 책임자 '000 차장'이 정기적인 주간보고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보고가 빈번하니 다른 인력으로 교체 요구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또는 관계자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인력교체 요구(예시1~3)는 제한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정당한 과업지시에 불응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로서 용역 수행 일정의 상당한 지연과 결과물의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시4)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이러한 이유로 회의 및 행사일이 정해져 있는 국제회의의 용역 특성상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이행 지연 등은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항 제4호에 준하는 교체사유가 될 수 있어 별도 명시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투입, 교체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명시된 인력투입계획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당초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인력교체 요청 등을 하여야 함. 계약당사자 간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행사인력 및 현장인력 등) 간에는 법령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인력의 투입·교체 및 업무감독)

③ 계약상대자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3항~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예시 1) 계약상대자가 현장인력으로 투입한 인력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력투입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div>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예시 2)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해당 주에 3회의 휴일 및 야간연장근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연장근로 시간이 1인당 12시간 이상인 경우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보장되는 원리와 동일하게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투입인력(행사인력과 현장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령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투입인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과 투입인력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근로관계 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 법령의 준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4.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④ 발주기관의 인력파견 요구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5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예시 1)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연락 담당 인력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인건비, 사무기기 및 비품)으로 파견 요구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예시 2)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행사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수행인력 파견 요구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과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편의를 위해 용역의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 없거나 현저히 낮은 관리적/행정적 업무를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파견을 요구할 수 없음. - 행사 준비와 관련한 사업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PL) 등이 참여율에 따라 행사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상근하면서 발주기관이 관리, 감독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을 대리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가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파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7조(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상대자의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계획에 따른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산출내역서
2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투입 인력수, 인력별 학력/경력/수행경험 확인 행사 부문별 인력 투입 현황 확인 행사인력과 연계된 용역공정 이행단계 및 결과물 산출 확인 투입인력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종합 검토 (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각호 해당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3	발주기관의 인력교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투입 계획 대비 투입인력 수 부족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추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경력/수행경험 미달 인력이 있는 경우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수행인력으로 인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일정 대비 지연되거나 결과물의 품질 부실 및 미완성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3.1	교체 사유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교체 필요성 및 세부 내용을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사유가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학력/경력/경험) 이상 인력으로 교체 준비 당초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투입인력의 학력/경력/경험 등의 미달은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 즉시 이행 발주기관의 교체 사유가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 각호에 미해당 또는 불충분한 경우 발주기관에 재검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3.2	교체 요구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교체가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사후 문서로 보완 필수 * 교체되어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 필수이며, 관계 법령상 위반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재검토 요청 (3.1 단계 재실행) 	-
4.	투입인력 관련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수행인력 및 유관 역무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지연, 품질 부실, 민원 발생, 손실보상 요구가 발생한 경우 제안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약정된 기준, 절차, 방법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포함 여부 등 종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4.1	계약상대자 유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범위 내에서 투입된 인력의 명백한 과실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구체적인 과업내용, 이행과정에 대한 법률적/실무적 조사 후 판단 	-
4.2	계약상대자 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안별 당사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책임이며, 행사 전반에 관한 사안은 발주기관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발주기관의 소관 	-
5.	투입인력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상기 제1~4단계별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상시 관리 및 감독 실행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적인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사실상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 이행 의무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9조는 국제회의용역이 용역 전체에 대한 하도급 또는 주요 역무에 대한 하도급이 아닌 다수의 리스, 렌탈, 인력공급 계약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과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승인 및 관리 감독의 한계를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 행사대행용역 등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대상인 전체 과업을 하도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나, 용역 특성상 일부 역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 제안서에 방송, 조명, 음향, 렌탈, 통역 등 단위 역무를 수행하는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반영하여 협력업체로서 평가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가 과정에서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발주기관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발주기관은 계약 및 용역의 사업 관리자로서 양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계약의 실질적 이행은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2항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있어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승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국제회의용역 이행의 특성상 전체 용역을 기획 및 설계하는 계약상대자와 단위 전문용역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라는 개념으로 공동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 제안서 등에 하도급계약 형태로 수행하는 용역의 역무와 상응하는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평가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외부 전문평가위원 등의 검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였다.
- 제3항 :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대상 과업내용 등이 당해 국제회의용역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 평가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된 경우에는 승인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승인에 갈음한 협력업체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계약체결 이후 추가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역무 전부 또는 상당 수준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보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관리·감독 및 관련 과업 지시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업무 관리 및 관리와 관련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거부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명기된 무대 설치 규모와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이동되었으나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 본래의 계획대로 설치할 것을 지시함. ☑ A기업은 당초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무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행사 현장의 무대 설치 여건과 공연 인원 축소되어 지난해 동일 행사에서 검증된 무대 설치 요건을 반영하여 진행함. 다만, 일정이 촉박하여 선집행 후 보고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함. </div>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또는 과도한 과업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2) 발주기관은 OO행사대행용역 계약체결 후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한 부스 설치 과정에서 직전 행사에서 활용된 무대 설치 자재와 폐기물 처리를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요구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제13조(지방계약법 제1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행사용역의 관리 책임자로서 행사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도록 과업내용서,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관리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당해 행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이행, 수정 및 보완 지시는 즉시 이행 또는 협의 등 사안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예시1과 같이 당초 기존 무대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그 계획을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의 협이가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수행한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내린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가 당해 용역 계약범위 내의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 이행에 필요한 선행 요건 및 이행환경은 발주기관이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경과 실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2와 같이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한 부스 설치의 과업 범위 내 업무라 할 수 있으나, 직전 행사에서 활용된 무대 설치 자재 및 폐기물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요건 및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A기업에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 - 실무적으로 당해 용역 계약상대자에 의한 이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상황에 관한 관리 감독은 당해 용역의 과업 내용,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선·후행 연계 과업 수행 요구는 대가 없는 과업 요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3. 계약이행의 감독"

② 하도급 요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승인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정의)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2항~제3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업체를 협력업체로 보고 발주 기관에 별도 보고 없이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은 제안서 및 기술협상 과정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및 영상 제작 관련 전문기업인 B기업을 협력업체로서 함께 이행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산출 내역서에도 별도 반영하여 제출함.</p> <p>- 이후 A기업은 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건으로 추가된 수상 무대 장치 설치를 전문기업인 C기업에게 하도급 함. 이 과정에서 A기업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히 진행되는 과업임으로 신속한 이행에 집중하면서 별도의 하도급 계획 및 진행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음.</p> </div> 원계약자인 계약상대자가 과업 내용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2)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무대설치를 담당하는 B기업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영상(C기업), 미술(D기업), 음향(E기업), 행사진행(F기업)에 대한 총괄을 일임하여 계약하는 등 사실상 원계약자인 A기업을 대신하여 전체 행사를 대행토록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p> <p>- 상기 B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은 협력업체로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C~F기업과의 계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p>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은 기본적으로 기획, 무대, 방송, 전시, 공연, 식사, 숙박 등의 복합적 단위 용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협업적 수행을 통한 공동이행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국제회의용역은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관리 대상 용역은 아니나 계약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용역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 기기, 설비 등을 단기간 임대(렌탈/리스 등)하거나 현장인력을 단기간 고용하는 계약 등은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제안단계부터 협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역무 수행기업들을 고려한 제안 등이 이루어지는바, 기술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검증되면 하도급적 계약 업무 수행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양측의 계약관리 수월성을 보장하고자 함. 그러나 이러한 사전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이후 추가 또는 기존 승인 갈음된 협력업체의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은 별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과 같이 B기업에 대한 계획을 사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C기업에 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예시2와 같은 경우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구분 없이 전체 용역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후 행사를 사실상 대행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계약 이행으로 승인할 수 없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p>☑ 하도급 승인 관련 일반적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승인 대상 계약 :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전체과업(예 : 국제회의+ 전시회+축제의 3개 과업 구성) 중 단위과업(예 : 전시회)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당해 국제회의용역이 전시회, 축제 등 다수 행사로 구성되는 경우 전시회 진행을 위한 전시장 조성 및 운영 등의 역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축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무대의 설치(소요되는 장비, 설비 등의 설치 포함)와 운영 등의 역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 하도급 승인 대상이 아닌 계약 :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과업이행에 소요되는 장비, 설비, 물품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력 등)을 행사기간 중 개별적으로 임대 또는 구매하는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방송/음향/조명 장비 설치와 운용 인력을 포함하여 개별 임대하는 경우, 항공권 예약(발권)/숙박 예약/기념품/인쇄물 제작 등과 같이 과업이행에 소요되는 물품, 용역 등을 단순 구매하는 경우 * 회의 및 축제 등에 소요되는 장비 및 설비 등을 개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니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무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가 관련한 단위 역무를 종합하여 완성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 대상 계약으로 볼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적 승인은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계약관리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 검증이 가능한 '협력업체'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발주기관의 의무임을 인지하여야 함. ● 따라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점부터 이러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경우 승인된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수월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협력업체가 당초의 계획에 따라 해당 단위 용역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함. ● 이를 보다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을 구분하는 승인 절차 제시*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본 용역계약 이행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행 가능하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같음하나 계약체결 이후 변경되는 내용과 신규 하도급 계약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5조(하도급 관리)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 등에 포함된 하도급 역무 (단위 용역) 및 수행업체 확인 용역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계약 추가 실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당초 협력업체로 하도급 승인 같음된 내용과 다르거나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승인에 같은한 협력업체 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 점검(대금 지급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2	용역 전부에 대한 하도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또는 계약 이후 추가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명목 또는 실질적으로 당해 국제회의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한 상당 부분을 특정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이행 및 관리하는 하도급 계획(또는 수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제안서 또는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서 특정 하도급업체의 역무 범위 과다 또는 산출내역서상 상당 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 금액이 설정되었는지 중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산출내역서
3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의 정상적 이행 여부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과업 지시 및 업무 감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기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됨을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 여부와 적법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0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 추가 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위배되는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과업 내용의 변경, 추가 등에 같은 다양한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사 및 회의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과 같은 연장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도 근로 및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명시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부득이하게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2항~제3항 : 본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공공부문 일반용역계약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해당 인건비 기준단가는 인건비 지급 대상 4개의 인력등급에 따라 차등적 기준단가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달 22일의 업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일 야간근로와 휴일 근무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용역의 적기 이행을 위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실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적인 대가지급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

- 제3항 : 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가 노동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모든 법적 제재와 금전적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이와 관련된 이익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계약상대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과 연계된 행사 일정이 2주일 앞당겨지면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 금주 12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통해 행사 준비를 완료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조정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A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p> <p>- 그러나 A기업은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행사인력 5명 중 3명에 대해 연장근로를 4시간씩 진행한 상태로 발주기관의 요청대로 12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경우 주52시간 기준을 초과하게 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인 A기업에게 제재가 부과되며 안정적인 용역 이행을 저해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연장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연장근로 지시가 상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일정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로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단,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상기 사례에서 A기업이 기 시행한 야간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비용은 A기업이 지급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행사인력 당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통지방식으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근로시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수행인력 중 계약상대자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로, 평일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인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연장근로 수용 가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연장근로 요구 시 투입되어야 할 행사인력 중 주 52시간 기준 초과 대상 확인 → 초과 여부에 따라 수용 여부 결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연장근로 요청에 따라 투입해야 할 행사인력이 주 52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 후 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3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지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평일 및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산출내역서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발주기관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수조정율이 아닌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관련한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임금의 변동에 한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⑤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근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당해 노무비 증액분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정오 : 제5항 → 제4항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1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당초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계약이행 조건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될 때는 과업 내용과 금액을 조정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회의용역은 6개월 이상 장기간 회의 또는 행사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산정한 특정 소요 품목의 가격(단가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제회의용역에서는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가 변동이 일정 수준 충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계약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물가변동이 기준값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항 :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지수조정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품목조정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품목조정율은 개별 품목별 단가 변동이 조정기준(3% 이상 증가)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조정요건의 충족 및 실제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제3항 : 물가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지방계약법 적용 발주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2”)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제4항 : 통상 국제회의용역은 국제회의 및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 설계, 실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상대자 소속의 행사인력과 행사 현장에서 전문단위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인력으로 구분하여 투입되고 있다. 이때 해당 현장인력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따른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 : 제4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증액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산일을 해당 단가와 임금이 변동된 날로부터 최근 도래 임금지급일로 분명히 하여 해당 사실 발생 즉시 임금을 조정하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준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있더라도 적용 기간 산정과 지급 기한 등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해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행과 해석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 진행 시 발주기관 임의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은 계약기간 7개월, 총 계약금액 320백만원인 OO국제회의용역에서 당시 해외에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 화상회의설비 비용을 35백만원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화상회의설비 가격이 34.2% 인상된 47백만원으로 변동됨.</p> <p>-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초과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하나를 결정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나, 만약 계약당사자 간 계약서에 별도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조정율 적용을 우선토록 하고 있으므로 예시1과 같은 상황에서는 품목조정율 적용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예시의 품목조정률을 산출하면 약 3.7%로 상기 조정기준에 부합됨을 알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산식</th> <th style="width: 4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품목조정률</td> <td>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 / 계약금액</td> <td>11.97백만원/320백만= 3.7%</td> </tr> <tr> <td>등락폭</td> <td>계약단가 x 등락률</td> <td>35백만원 x 34.2% = 11.97백만원</td> </tr> <tr> <td>등락률</td> <td>(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td> <td>(47백만원-35백만원)/35백만원 = 34.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지방계약법 적용 발주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2)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구분	산식	내용	품목조정률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 / 계약금액	11.97백만원/320백만= 3.7%	등락폭	계약단가 x 등락률	35백만원 x 34.2% = 11.97백만원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47백만원-35백만원)/35백만원 = 34.2%
구분	산식	내용												
품목조정률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 / 계약금액	11.97백만원/320백만= 3.7%												
등락폭	계약단가 x 등락률	35백만원 x 34.2% = 11.97백만원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47백만원-35백만원)/35백만원 = 34.2%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인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 시점에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조정율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조정 상황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 간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제5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 중인 A기업은 계약문서로 첨부한 산출내역서상 현장투입인력 5인에게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으나 전체 용역기간 6개월 중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조정 소요가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이 거부 </div>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발주기관 임의로 설정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2) A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체결 후 행사보조 인력으로 안내 담당인력 5명에 대해 중기중앙회 시중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인력 기준으로 80,000원에 70일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중노임단가가 2,000원 증액되어 82,000원으로 변동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50일간 기존 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하였음. - 행사보조 인력으로 고용된 5명은 임금 변동 사실을 확인하고, A기업에게 즉시 상향된 기준노임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준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A기관이 조정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행사인력과 현장인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이 투입 및 운용되며,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받는 행사인력과 달리 현장인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행사보조인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중기중앙회 시중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단순노무 인력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예시 1과 예시 2와 같이 국제회의용역계약 체결 시점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책정하였다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단가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상기 예시 2에서 행사현장 안내인력은 행사보조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준노임단가 2천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82,000원을 기준으로 잔여 고용기간과 기준노임단가 변동 후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은 20일에 대해서도 임금 상승분을 소급하여 가장 최근 도래한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단,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업량을 조정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1	계약조건 중 물가변동 관련 적용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협의를 통해 선택 후 명기 *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 명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조정율'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1-2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상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해 연말 및 연초에 걸쳐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 변동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연도별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 연도별 발표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2	물가변동 사유 적용 상황에서 조정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특정비목의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사전 계약 조건으로 정한 물가변동 조정기준 적용 * 물가변동을 회피하거나 보다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 모두 사전 정한 적용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더라도 사전 정해진 적용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특별히 정하지 않아 품목조정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3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는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의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 적용 검토 가능 시중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후정산 등이 아닌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적용하여 최근접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즉시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투입인력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변동 시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조정절차와 동일하게 임금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 변경계약 또는 사후정산 계약관리 절차 이전 시중노임단가 등이 변경된 즉시(또는 인지된 시점)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조정하여 투입인력 등에 신속히 지급하는 것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연도별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 연도별 발표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추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계약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순서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 추가적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정 및 사전수행 과정은 제5조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2조는 계약 목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요구 권한을 명시하면서 불명확한 과업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과업 변경 요구 또는 협의 미시행 등 요구 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계약이행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 특히, 과업 변경 시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동시에 추가과업 등에 따라 유발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임의적 변경 요구를 제한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의 내부 대응(수행) 역량과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으로서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의 추가/변경, 용역공정계획의 변동, 특정 단위 역무의 삭제 및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용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 간 과업 변경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토록 하였다. 이는 용역계약을 통한 당해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자로서의 발주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긴급한 용역 이행 상황에서 이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변경된 과업 이행 결과 추가적인 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항 : 과업 변경의 목적과 취지상 과업 내용의 변경은 당해 과업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추후 계약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5조의 통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문서로서 효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제4항 : 본 용역계약은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바 과업 변경 요구 역시 계약 상대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특히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과업 내용서상의 과업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변경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계약 상대방의 과업 변경 요구에 대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 역시 당해 용역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업 변경 요구를 자유롭게 하고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여부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항 : 계약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확정되고, 이 과업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에 상응하는 대가 역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과업내용의 추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1항~제2항, 제5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과업내용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기존 과업내용 상 한 달 뒤로 계획된 전시회 일정을 2주일 앞당기고,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전문가 초청강연을 2회 시행할 것을 구두로 통보함.</p> <p>- A기업은 당초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라 한달 후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 일정을 앞당기고,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던 초청강연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발주기관에 협의 조정할 것을 요청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 추가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예시와 같이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예시1의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지 못하고,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전시회 및 초청강연을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또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과업내용을 추가해야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조건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대가 없는 과업 요구가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추가된 과업내용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단,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업량을 조정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부족하여 변경된 과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과업 중 산출 내역서상 대가가 책정된 과업을 제외하고 해당 과업에 할당된 비용을 추가 수행을 요구한 과업의 이행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지의 방법으로 확정함으로써 기존 삭제된 과업을 대가 없이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1조(변경계약 체결)

② 과업변경 절차 이전 과업내용의 이행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전 과업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무대 장식에 사용되되는 꽃을 당초 제안한 조화가 아닌 생화로 변경할 것을 행사 이틀 전에 통지함.</p> <p>- A기업은 무대장식을 조화에서 생화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3배 이상 소요되므로 발주기관에 과업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은 행사일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수행할 것을 구두로 요청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행사 현장의 진행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과업내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예시와 같이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검토 및 승인절차로 인해 과업변경과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 경과하면 용역의 성공적 이행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변경된 과업을 이행토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시기 및 내용 등을 구두가 아닌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 또한 발주기관이 변경계약 진행 시점 및 내용 등을 통지하고 우선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행 자체에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면 신속히 이행하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 등 변경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③ 계약상대자의 과업변경 제안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유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발주기관이 회신을 지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초 과업내용은 회의장 외부의 참석자들을 위한 80인치 LED 디스플레이 10대를 설치하여 중계토록 되어 있음.</p> <p>- 이에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행사 준비 중 설치장소가 실내고 어두운 환경이므로 동일 비용일 경우 약 2배 크기 화면인 150인치 빔프로젝터 10대를 동일 활용하는 것이 더 회의 진행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기관에 이를 제안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록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요구한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예시와 같이 비용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동 없이 당초 제시한 과업내용보다 좋은 성능과 품질의 장비 등을 활용하는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 역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당초 제시한 과업내용 보다 과업 내용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는 것이 발주기관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제안 역시 변경 제안한 내용의 시의성과 이행 가능성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제안 접수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회신토록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예시와 같이 통보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해당 제안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준비기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안 이행 가능 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 통지하고, 만약 내부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중간 검토 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공유하여 적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과업내용 변경 사유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 변경 사유 확인 1) 본 표준계약서 제3조에 따른 기본과업 이외 추가 과업 소요 2)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일정 변경 소요 3) 당초 기본과업(계약체결 이후 통지사항을 포함)에 포함된 과업 항목 및 세부 수행내용의 삭제 또는 축소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2	과업내용 변경사유별 계약금액 조정 여부 판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과업 이외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과업인 경우 신규 과업 수행 소요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여부 검토 → 용역수행 일정 조정에 따라 기수행된 과업의 재수행 또는 변경 수행 등을 유발하거나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 요청 2) 용역수행 일정을 변경하여 동일한 수행조건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만 조정 3) 기본과업의 과업항목이 삭제(특정과업 수행이 취소되는 경우)되거나 과업항목은 존재하나 기간, 투입물량, 세부수행계획 등이 축소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본과업 내용의 삭제 또는 축소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요청 <p>* 단, 기본과업 및 당초 용역수행일정을 기준으로 추가 및 변경된 과업내용으로 증액 소요와 특정 과업 항목의 삭제 및 수행내용의 축소에 의한 감액 소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증액 조정 필요에 따라 당초 사업예산(낙찰 차액 등)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계약대가 지급 방법에 따름)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필요하나 당초 사업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본과업 내용의 삭제/축소 등을 통해 해당 과업 배정 비용을 증액 조정 소요로 지급(상계 처리) 긴급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변경계약 절차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p>* 발주기관 임의로 계약상대자에게 사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4	계약금액 조정금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증액되는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문서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하여 조정금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 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당사자가 아래 각목의 사유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수행 조건*,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상기 가목에 따른 투입인력의 변동 집행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단, 제11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른 법정 계상율을 준용한다.

* 정오 : 조건 → 조건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제11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은 최저임금에 기반한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대가를 정한 경우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였다(본 표준계약서 제11조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인력에 대한 포괄적 적용 상황임).

또한 기타 사전 특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제 협의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당초 계약체결 한 과업내용이 외견상 변동이 없더라도 세부적인 이행 방법과 조건이 변경에 따라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수행방법, 투입인력이 변동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1조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치(물가변동을 3/100 이상) 이하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본 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제2항 :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노무비(인건비), 경비 등의 실비로서 순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실비에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곱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함께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계상율 역시 계약문서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설정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설정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거부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중인 A기업은 계약문서로 첨부한 산출내역서상 현장투입인력 10인에게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으나 전체 용역기간 7개월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조정 소요가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본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이므로 계약금액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함. 발주기관은 현장인력 10인은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 책정기준으로 적용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 제1항은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노무비 책정기준 역시 변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것임. 따라서 예시와 같이 현장인력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는 없음. <p>*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제4항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인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조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 책정기준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적용한 경우임.</p>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조정 사유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상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위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2항 나목의 적용은 단순히 가목의 과업수행 조건 등의 변화에 따른 투입인력의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계약이행 자원의 투입량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금액 조정 사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11조(물가/기준노임단가 변동), 제12조(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조정 사유 여부 판단 명시적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제13조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기타 계약내용 변경 사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변동 사안 해당 여부 판단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책정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적용한 경우 본 조 적용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투입인력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과 직접 관련된 본 표준계약서 제11조를 적용하여 조정 2) 기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인원, 물량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확정된 과업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 과정 중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인원, 물량의 투입량이 변경되었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적용 - 당초 계약체결 시점 과업내용 중 인원, 물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적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3	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인건비 및 경비 등에서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지 확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순원가(인건비+경비) 인상분에 계약문서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1.25/1000(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1.3/1000)를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을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 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4조는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발주기관의 유형 및 용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여 적기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체상금을 계약 지체가 아닌 용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체상금 부과 기준인 지체일수와 부과율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다른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본 표준계약서 제4조의2에 따라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위약벌 또는 실질적 손해발생에 따른 금액을 부과한다는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기준 3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제2항 : 전체 계약기간 기준 이행지체와 상관없이 그 이전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정상적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내용이므로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제3항 : 지체된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와 기타 지체상금의 부과가 부당한 사유에는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지체상금 산정 기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던 A기업은 협력업체와의 분쟁으로 계약기간을 20일 초과하여 야외에 설치한 무대 장치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의 계약 완료 기한을 미준수하였으므로 총 계약금액 800백만원을 기준으로 20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0백만원(800백만원*0.00125=1백만원/일) 지급을 요구함. - 그러나 A기업은 총 계약금액 800만원에서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기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지급받은 기성대가 300백만원을 제외한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함. </div>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총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회의의 관련 부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를 계약완료 10일 전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계약완료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을 경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당초 계약금액 500백만원의 40%인 200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A기업에게 요구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일정에 따라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그에 따른 기성대가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과업내용은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역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만큼만 지체상금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예시1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총 계약금액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12.5백만원(500백만원*0.00125=625,000/일)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지체상금 부과가 적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시2와 같이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대비 과도하게 산정되면 정상적으로 이행한 부분까지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므로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금액(기성 및 기납부분 제외)의 30/100을 한도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임. 따라서 예시 2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1.25/1000(국가계약법 적용 계약의 경우)을 적용하여 60일에 대한 지체상금 37.5백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인수(용역수행 일정표 등에 따라 해당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으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재수행 통지가 없는 경우 인수에 갈음함)한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된 과업에 상응한 금액을 지체상금 산정 시 기준인 계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경우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 시점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업에 상응하는 계약금액도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지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위약벌적 성격의 지체 상금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 상금의 부과 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지연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계약당사자인 OO발주기관과 A기업은 회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계약종료 15일 이전까지 수정사항을 통지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 진행 후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발주기관의 내부 심의 일정 지연으로 수정 보완 내용에 대한 통지가 계약 완료 3일 전에 A기업에게 접수되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종료 10일을 경과하여 보완 제출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오류가 많아 보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 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사례의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약종료일 15일 이전에 보완 사항을 통보하였다면 계약기간 내에서 수행 완료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이는 적정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 완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실한 결과물 제출을 이유로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가 예측된다면 제1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제출된 결과물의 완성도와 품질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이를 사전 약정 및 협의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적기 통보하였음에도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 상금의 부과 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이행 지체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 계약문서로 첨부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추진 일정에 따라 용역을 이행 완료하였는지 확인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정해진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지체 사유에 따라 지체상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님. -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기성대가 지급 또는 기 완성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2	지체상금율 산정 기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율 1.25/1000를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율 1.3/1000을 적용 * 발주기관 임의로 지체상금율 설정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3	지체상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지체상금율과 지체기간(일수 등)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확정함. 확정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대비 3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100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 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등은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③ 발주기관은 제14조제3항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시적인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기간 변동 등 명백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계약 완료 이후 행사의 사후관리, 행정처리 등의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④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⑤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사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투입 및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5조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과 상관없는 자의적인 계약기간 연장 요구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또는 간접비 등 대가 미지급 등 과도한 부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제2항 :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쌍방에게 계약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절차를 명시하였다.
- 제3항 :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기관은 국제회의용역의 성공적 이행 완료를 위한 목적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 제4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로서 연장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에 제약을 가하는 등의 부담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계약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제5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계약종료일을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발주기관은 회의 주최 기관인 상위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1회의 추가 회의 진행 요구를 사유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계약기간 내에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A기업은 남은 기간동안 당초 과업내용인 종합회의와 만찬 일정 이행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회의를 추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에게 당초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행정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처리 등이 어려우므로 본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계약이 아닌 추가계약을 진행하자고 통지하면서 행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초 투입한 행사인력과 방송시설 등의 유지를 요구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예시 1과 같이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에 추가과업을 지시한 경우는 본 표준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완성도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예시와 같이 추가과업으로 인한 계약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먼저 추가과업 수행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만약 계약당사자 간 추가과업 수행에 대해 협이가 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와 별개로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 표준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에 투입해야 할 인력과 장비는 기존 용역수행계획에 반영된 인력과 장비라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기존 인력 및 장비가 타 용역 투입 계획 등으로 인해 기존 인력 및 장비를 연장기간 동안 투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인력과 장비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p>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연장으로 타 용역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과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해당 타 용역 발주기관과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추가과업 수행방식에 있어 당해 계약과 관련된 과업을 새로운 계약체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모두 불필요한 행정처리 및 비용을 유발하므로 적정하지 않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계약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②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요구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3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계약목적물 완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완료 이후 사후관리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검사를 신청한 A기업에게 계약금액 조정 없이 해당 용역과 관련한 발주기관 내부 보고회에 사용할 보고자료와 발표자료를 30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발주기관 내부 보고회는 발주기관의 고유 업무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 의무가 없으므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발주기관은 이는 계약내용으로 진행된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로서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며 행사 이후 예상되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락, 문의, 자료 요청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관점에서 30일간 기존 투입되었던 행사인력 4인 정도를 유지하여 보고회 및 연계된 후속 업무를 지원할 것을 재차 요구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예시와 같이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실질적인 과업수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내부적인 사업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 사유(동 예규 제18조제3항 각호에 따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음. 특히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종료일 30일 이후에 있을 발주기관의 내부행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행사인력 유지하는 것은 해당 인력이 인건비 등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 용역을 연장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내부적인 사업관리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적정대가를 산정한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p>관련 유의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기간 연장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사유 해당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용역착수 및 지연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기 4가지 사유 이외에 발주기관 내부 차원에서 소요되는 사후 업무처리 절차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2	계약기간 연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상기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과업 수행, 기타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3	계약기간 연장에 다른 후속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당초 계약에 투입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속 투입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계약상대자가 해당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타 용역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에 지속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의 인력, 장비 등으로 대체 투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제16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지방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는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④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 본 계약의 과업이행을 통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6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완료 후 용역수행에 대한 부분 또는 전부 완료 여부를 판단 하는 검사와 인수는 대가의 지급 청구 등을 위한 선행 절차로 핵심적인 계약요건이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수행된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권한이 제한되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 후속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대가지급의 선행단계로서 검사 절차의 실행에 있어 검사기간 등 기준을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적정 기일에 용역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발주 기관은 14일 이내(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검사 완료 및 결과를 통지 하도록 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한 장기간의 검사 일정으로 인한 대가지급 지연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완료한 경우로서 대금지급 청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는 제5조에 따른 통지방법으로 발주기관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2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적기 대금지급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신속한 검사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연장 가능 사유를 명시하였다.
- 제3항 : 계약상대자가 완료한 용역 결과물에 하자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4항 : 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 아닌 계약 관리에 소요되는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부당한 검사 거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검사) 제1항~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1)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면서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진행 상황에 구두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유로 계약종료일을 경과한 25일 동안 검사 진행 후 결과를 통보함.</p> </div> ● 계약목적물 이행과 관계없는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2) A기업은 7개월간의 OO국제회의용역을 이행완료 한 후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비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사 진행을 거부함.</p> <p>- 또한, 사후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될 경우 제출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함.</p>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완성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완료 사실을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은 검사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불가항력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토/일요일 등 휴일 포함하고 검사기간 말일 토/일요일 등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까지 포함)*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따라서 예시1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것은 규정상 검사완료일보다 11일을 초과하여 지연 통보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임. ● 또한, 본 표준계약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위한 원가검토업무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무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시 2와 같이 이를 사유로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의 검사기간이 적용됨. *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기관은 본 표준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에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는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용역완성의 검사"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상대자의 검사신청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완료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를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함.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른 과업 이행 및 일정 준수 여부 확인 검사 신청한 용역 이행 내용과 결과물에 오류 및 기타 중대한 하자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2	검사접수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검사를 14일 이내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검사기간에는 토/일요일과 휴일은 포함되며 검사 기간 14일째 말일이 토/일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검사 진행 및 통지 가능 단, 계약이행 내용에 검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조치를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3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기간은 계약종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 내용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안전 및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단, 행사로 진행된 경우로서 해당 행사 종료 이후 발생한 계약목적물은 제외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7조는 실무적으로 일부 국제회의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손해부담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용역을 재수행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손해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이를 통해 계약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부분을 사후적으로 문제화하여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용역의 정지 등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있는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국제회의용역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용역을 재수행하게 요구하는 등 계약상대자에 과도한 손해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 제2항 : 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이행과 관련한 행사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은 단순히 발생 사실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고, 안전을 위협한 사고 등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관리 노력,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계약의 내용과 관련성 없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책임 부담은 본 용역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특정하고,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 제3항 : 계약목적물 인수 후 사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본 표준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검사와 인수를 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의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계약상대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거나 기 인수한 결과물에 대한 손해부담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일반적 손해)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1) A기업은 OO지역 축제 개최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주기관이 사전 섭외한 OO시 문화회관 공연무대에 방송, 음향 장비 설치를 완료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설치 장소 특성상 야간에는 해당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OO시가 지정한 경비업체가 관리하고, 주간에는 행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A기업이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함. - 그러나 행사 진행 2일 전 문화회관의 천장에서 천장재가 탈락하면서 A기업이 설치한 공연무대 설비의 30%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5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에게 행사 현장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부담하고 긴급히 재설치할 것을 요구함. </div>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산출물을 인수한 후 망실에 따른 손해부담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2) 발주기관이 지난주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 및 부대행사의 결과물을 중간 산출물로 인수하여 내부 검토 및 활용 후 보관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기제출한 산출물이 망실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은 피해복구 중 A기업에게도 중간 산출물의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A기업은 인쇄비 등 재제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용역 결과물 산출물 생산과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있으므로 추가작업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고 재제출할 것을 요구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손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예시 1의 경우에도 천장 파손사고와 무대설치 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손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 특히, 행사장소인 OO시의 문화회관을 발주기관이 섭외하여 지정한바 해당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천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였다면 이는 발주기관과 OO시 간 행사장소 대여와 관련한 계약조건 또는 협의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음. 또한, 예시 2와 같이 발주기관이 기 인수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시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부담하며 관련 산출물을 재제출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특히 상기 사례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결과물 인수 후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 해당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수, 점유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결과물 재제출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특히 계약상대자의 실질적 관리범위 밖에 있는 손해를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다만 행사현장의 시설물관리, 참석인원의 통제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인 바, 이로 인한 사고예방과 대응절차(보험가입 등) 등을 사전 명확히 협의하여 별도 약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물 재작업 및 재인쇄 등을 통한 유형의 결과물 산출과 별개로 과업수행조건으로 용역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디지털 파일 등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재작업 등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인수),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2. 용역목적물의 인수", "3. 기성부분의 인수",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손해 발생 사유별 손해 부담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사건, 사고 등이 본 용역 계약조건과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인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등 계약이행 중 명백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서 손해가 발생 * 단, 안전 및 위험관리에 있어 행사 시간, 현장 및 인력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계약내용 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포괄적 위험부담 요구 부적절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목적물 및 중간 산출물 등 결과물의 훼손, 망실 등 발주기관의 책임 관리범위 내에서 손해 발생 - 발주기관이 기 인수한 결과물 등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2	손해 부담 예외 사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행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사진집 등 물리적 결과물이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회의 및 행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감염병 등),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본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회의록 및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와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은 본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당사자 상호간 통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주기관에 통보되는 날까지의 기 집행비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로 보고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닌 용역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다.

1. 인건비 :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행사인력(현장인력 제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경비 : 기획서, 보고서, 기획시안, 도면, 무대 등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결과물의 제작, 설치, 구성, 창작 등에 소요된 재료비, 원고료, 설치용역비, 디자인비 등의 금액.
3. 일반관리비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4. 이윤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 비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⑥ 제5항 각호에 따른 손해 금액은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를 통하여 해당 비목의 지출과 결과물 산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 예정된 수행일정 및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손해금액은 하도급 계약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손해액의 지급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손해 금액의 산정에 있어 지출여부의 판단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비용이 집행된 경우 :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수령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청구) 등의 대금 청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경우에는 청구서의 청구금액과 관련된 용역 결과물(도면, 사진, 설계도,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
 3. 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 : 용역 결과물 또는 특정 용역결과물의 도출을 위한 중간 결과물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용역수행 공정표(수행계획표 등)상 특정 완료기일에 최종 결과물이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간 또는 진행 중인 결과물(사진, 도면, 영상, 시제품 등) 및 관련 자료 제출(이 경우 손해금액은 용역수행 공정표상 해당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는 예상 일정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물에 계상된 비용에 산정일 현재 진도율을 곱하여 산정)
- ⑧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본 계약 대상인 국제회의용역이 기간 및 기 수행된 과업이외 다른 내용의 변동 없이 추후 재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과업기간의 연장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 ⑨ 발주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8조는 국제회의용역 개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용역의 정지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분쟁과 해석상 이견이 크게 발생하여 이와 관련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손해부담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규정하여 계약상 권리가 제한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법률적 계약 관계에서 면책이 적용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안 발생 시 해당 여부 및 손해 등의 책임 부담 등에 대해 분쟁과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하여 국제회의용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하였다.

- 제2항 : 불가항력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 모두 면책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함을 본 표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연장선상에서 본 표준계약서 제18조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규정하였다.
- 제3항 :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통한 역무의 완료 또는 집행 사실 확인이 실무적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가항력을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산정과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4항 : 불가항력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귀책이 아닌 상황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 부담이 면책되는바 그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확인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당사자 상호 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 :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 산정에 있어 쟁점과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산정 대상 비용에 대해 손해 입증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6항 : 손해 산정의 기본은 기 집행된 비용과 결과물 산출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의 연계성(과업 내용 - 해당 과업 내용의 공정 완료 예정일-대가 반영 또는 지급 여부)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 예정된 수행 일정 및 결과물을 고려하여 손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7항 : 제6항에 따른 손해 금액 산정에 있어 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참조 기준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회의용역의 특성상 행사 및 회의 진행 시점에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기획, 준비, 산출하는 활동은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실무적으로 예상 공정표 등을 참조하여 실제 행사 시점에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역무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산출물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 범위에 포함토록 하였다.
- 제8항 :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어 추후 재개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보다는 과업기간 연장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9항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가 제4항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입증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1항~제3항, 제9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적용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 입장이 다른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기간 총 8개월 중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주기관이 행사를 함께 기획한 상대국의 국내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상대 국가의 국내 사정에 따라 회의가 취소되는 것은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등이 아니므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5개월간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 발주기관은 공동 개최국인 상대 국가의 사정에 따라 회의계획이 취소된 것은 발주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일이므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적용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 입장이 다른 경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당 사유가 불가항력 사유임을 입증해야 함. 예시의 경우 발주기관의 불가항력을 사유로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 상대자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해당 사유가 불가항력 사유임을 입증하여야 함. 예시와 같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제2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발주기관이 해당 사유를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로서 불가항력 사유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시1에서 A기업이 요구하는 기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단계에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에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닌 상위 중앙행정기관, 협력 기관 또는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행사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본 표준계약서 제2조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이 상기와 같은 문구를 제시한다고 하여 모든 상황이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불가항력 사유 적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신력을 갖춘 객관적 증빙자료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처리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조사 및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행사준비를 위해 설치한 야외무대가 기상청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시설보호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태풍으로 인해 크게 파손되자 불가항력 사유임을 통보하고 재작업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함.</p> <p>- 발주기관은 A기업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의 태풍 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판단하여 당초 공정표 상 기간 내 완료할 것을 요구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계약 관계의 종료, 손해보상 등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통보한 불가항력 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후 그에 기반한 수용 및 조치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상호 간 불가항력 사유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조치는 제5조의 방법에 따라 통지되어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손해 산정 방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5항~제6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예시) 계약기간 총 9개월 중 6개월이 된 시점에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방역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가항력 사유는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집행한 비용은 기성대가로 지급하되,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 -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까지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를 통해 계약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예를 들어 제5항에 따라 각 비목별로 손해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약 5.5개월에 해당하는 125일(22/월, 업무일 기준)이며, 계약상대자에 선금 120백만 원을 기지급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비목</th> <th style="width: 50%;">산출내역서상 내용</th> <th style="width: 40%;">손해 금액 산정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td> <td> - 당해 용역에 행사인력으로 5명을 참여율 100%로 투입 - 월 인건비는 기준단가 4백만 원*으로 책정 * 1일 인건비로 환산할 경우 1인당 181,818원 (소수점 이하 절사) </td> <td> - 총 기간(125일) x 행사인력 수(5명) x 1일 인건비(181,818원) = 113,636,250원 </td> </tr> <tr> <td>경비</td> <td> - 총 185,000,000원 * 경비 포함 내역 : 기획서(5백만원), 보고서(7백만원), 기획시안(5백만원), 원고료(3백만원), 디자인비(3백만원), 도면(2백만원), 무대설치(50백만원), 재료비(30백만원), 음향장비(5백만원), 방송장비(5백만원), 기념품(10백만원), 식음료(30백만원), 항공권(20백만원), 현장인력 인건비(10백만원) </td> <td> - 계약 해지 통보일까지 집행 사실이 인정된 금액 = 115,000,000원 </td> </tr> <tr> <td>일반 관리비</td> <td>- 일반관리비율 8% 설정</td> <td>- (113,636,250 + 115,000,000) x 8% = 18,290,900원</td> </tr> <tr> <td>이윤</td> <td>- 이윤율 10% 설정</td> <td>- (113,636,250 + 115,000,000 + 18,290,900) x 10% = 24,692,715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총 손해금액(271,619,865원) - 선금(120,000,000원) = 151,619,865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와 같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이중 선금 등 기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손해금액을 산정함. 		비목	산출내역서상 내용	손해 금액 산정 결과	인건비	- 당해 용역에 행사인력으로 5명을 참여율 100%로 투입 - 월 인건비는 기준단가 4백만 원*으로 책정 * 1일 인건비로 환산할 경우 1인당 181,818원 (소수점 이하 절사)	- 총 기간(125일) x 행사인력 수(5명) x 1일 인건비(181,818원) = 113,636,250원	경비	- 총 185,000,000원 * 경비 포함 내역 : 기획서(5백만원), 보고서(7백만원), 기획시안(5백만원), 원고료(3백만원), 디자인비(3백만원), 도면(2백만원), 무대설치(50백만원), 재료비(30백만원), 음향장비(5백만원), 방송장비(5백만원), 기념품(10백만원), 식음료(30백만원), 항공권(20백만원), 현장인력 인건비(10백만원)	- 계약 해지 통보일까지 집행 사실이 인정된 금액 = 115,000,000원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율 8% 설정	- (113,636,250 + 115,000,000) x 8% = 18,290,900원	이윤	- 이윤율 10% 설정	- (113,636,250 + 115,000,000 + 18,290,900) x 10% = 24,692,715원	계		- 총 손해금액(271,619,865원) - 선금(120,000,000원) = 151,619,865원
비목	산출내역서상 내용	손해 금액 산정 결과																		
인건비	- 당해 용역에 행사인력으로 5명을 참여율 100%로 투입 - 월 인건비는 기준단가 4백만 원*으로 책정 * 1일 인건비로 환산할 경우 1인당 181,818원 (소수점 이하 절사)	- 총 기간(125일) x 행사인력 수(5명) x 1일 인건비(181,818원) = 113,636,250원																		
경비	- 총 185,000,000원 * 경비 포함 내역 : 기획서(5백만원), 보고서(7백만원), 기획시안(5백만원), 원고료(3백만원), 디자인비(3백만원), 도면(2백만원), 무대설치(50백만원), 재료비(30백만원), 음향장비(5백만원), 방송장비(5백만원), 기념품(10백만원), 식음료(30백만원), 항공권(20백만원), 현장인력 인건비(10백만원)	- 계약 해지 통보일까지 집행 사실이 인정된 금액 = 115,000,000원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율 8% 설정	- (113,636,250 + 115,000,000) x 8% = 18,290,900원																		
이윤	- 이윤율 10% 설정	- (113,636,250 + 115,000,000 + 18,290,900) x 10% = 24,692,715원																		
계		- 총 손해금액(271,619,865원) - 선금(120,000,000원) = 151,619,865원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에 대한 손해 금액 산정 시 행사인력만 포함되며, 현장인력은 경비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함. •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를 제5조를 통해 통지할 때 계약 해제/해지일을 당일로 정하였다면 손해 산정 시 계약 해제/해지일(=통지일)까지가 기준이 되겠으나, 통지 시 계약 해제/해지일을 별도로 설정하였다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함. • 계약의 해제/해지가 아닌 용역을 정지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한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름.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원가계산비목), 제25조(작성방법), 제26조(인건비), 제27조(경비),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④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손해 증빙 방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6항~제7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이 확인된 부분만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제18조 제6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계약체결 시점 제출한 용역 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와 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통지된 시점인 2022년 8월 4주차까지의 손해 금액을 모두(비용이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등 포함) 산정하였으나, 발주기관은 통지 시점까지 계좌이체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출 완료된 부분만 인정한다고 통보함.</p> <p>- 또한 협력업체가 수행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간 계약 관계이므로 A기업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등에 따른 손해 부담의 주체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집행 비목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정기준과 관련 증빙자료가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인건비의 경우 당해 용역수행 과정에서 행사인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통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보상하여야 함. 그러나 경비의 경우 세부 비목별로 실제 지출 여부, 결과물 산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경비 비목과 관련한 손해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인정 여부를 상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경비 지출 인정 범위(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용이 집행된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증빙자료에 따라 지출된 금액에 따름. - 그러나 보고서 인쇄비와 같이 중간 및 최종보고서 비용을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함께 결제하였으나,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으로 중간보고서까지만 진행되었다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인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조 검토 필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협력업체에 의해 진행된 무대설치, 식음료 케이터링 등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각의 계약서상 완료 일자, 청구 서류, 결과물 등이 확인될 경우 비용지출 사실인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기획시안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급 완료 또는 지급요청 관련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없음. - 그러나 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단위 역무별 결과물을 반영하여 초안을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수행이 완료된 과업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체 보고서 작성에 할당된 금액 중 기간 및 초안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 - 기획시안의 경우 기획서에 따른 시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최종 완성물 대비 약 80% 정도의 결과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당초 기획시안에 계상된 총 비용의 약 80%를 인정 </td> </tr> </tbody> </table>	구분	경비 지출 인정 범위(예시)	비용이 집행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증빙자료에 따라 지출된 금액에 따름. - 그러나 보고서 인쇄비와 같이 중간 및 최종보고서 비용을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함께 결제하였으나,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으로 중간보고서까지만 진행되었다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인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조 검토 필요.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협력업체에 의해 진행된 무대설치, 식음료 케이터링 등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각의 계약서상 완료 일자, 청구 서류, 결과물 등이 확인될 경우 비용지출 사실인정 	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기획시안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급 완료 또는 지급요청 관련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없음. - 그러나 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단위 역무별 결과물을 반영하여 초안을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수행이 완료된 과업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체 보고서 작성에 할당된 금액 중 기간 및 초안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 - 기획시안의 경우 기획서에 따른 시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최종 완성물 대비 약 80% 정도의 결과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당초 기획시안에 계상된 총 비용의 약 80%를 인정
구분	경비 지출 인정 범위(예시)								
비용이 집행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증빙자료에 따라 지출된 금액에 따름. - 그러나 보고서 인쇄비와 같이 중간 및 최종보고서 비용을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함께 결제하였으나,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으로 중간보고서까지만 진행되었다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인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조 검토 필요.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협력업체에 의해 진행된 무대설치, 식음료 케이터링 등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각의 계약서상 완료 일자, 청구 서류, 결과물 등이 확인될 경우 비용지출 사실인정 								
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기획시안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급 완료 또는 지급요청 관련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없음. - 그러나 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단위 역무별 결과물을 반영하여 초안을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수행이 완료된 과업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체 보고서 작성에 할당된 금액 중 기간 및 초안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 - 기획시안의 경우 기획서에 따른 시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계약 해지 통지일 기준 최종 완성물 대비 약 80% 정도의 결과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당초 기획시안에 계상된 총 비용의 약 80%를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손해보상액 중 계약상대자와 역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주기관에게 받은 손해액을 하도급업체의 지급요청 금액 또는 업무수행 비율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경비 지출금액의 인정은 지급 사실 및 지급요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겠으나,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유형의 결과물이 제작 및 작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과 최종 완성물 대비 진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제8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회계연도 내에 불가항력 사유 해소가 예상되어 계약의 해제/해지가 아닌 변경계약을 통한 과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발주기관은 방역당국의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상반기 진행 예정이던 국제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함. 다만, 발주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연내 하반기에 회의 개최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점에 재입찰할 것을 요구</p> <p>-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해당 행사가 연중 시행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례적 회의로 하반기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청</p>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국제회의용역 재개가 예상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종료하는 것보다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용역수행을 정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이나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과업 기간만을 연장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발주기관에게는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와 소모적인 반복적 입찰 집행을 예방할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해소에 이후 기존 계약연장의 연장 및 지속은 계약당사자 모두 호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계약상 권리 유지 이외 제1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한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시점에서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추후 새로운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계약체결 후 불가항력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상호 간 그 사실을 통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불가항력 사유 발생과 손해 부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통지의 방법으로 공식화해야 함. 상호 간 통지 후 발주기관은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2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 관계 지속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 해소 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다시 행사를 추진할 가능성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으로 진행 우선 검토 * 단,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 사유 해소 후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용역계약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기간 연장 이외 추가 비용부담 요구 제한 불가항력 사유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제24조에 따라 처리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3.1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시 손해 발생 여부 확인 및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해지를 통보한 경우 이 통지일까지 발주기관의 검사가 완료된 과업 내용 및 용역수행계획표 등에 따라 수행이 완료된 내용 확인 계약당사자 간 불가항력 사유 적용 및 손해 범위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면, 계약이행 중 불가항력을 주장한 계약당사자가 해당 사유가 불가항력인 근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검사검수조서 - 산출내역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3.2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손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 산정은 계약일로부터 표준계약서 제5조 통지의 방법으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관계 종료가 통보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집행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지출 증빙자료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의 경우 지급 완료분, 지급요청분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확인 후 인정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계약 관계 종료 통지일 이전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내용으로서 산출된 중간 결과물 확인 후 완성도를 고려하여 인정액 결정(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전반적으로 계약 관계 종료 통지일까지 용역 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수행 과업과 지출된 비용의 연관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4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손해 종합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손해 상황을 발주기관이 파악한 후 계약 관계를 지속할 경우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한 변경 계약 체결 계약 관계 종료(해제/해지) 시에는 입증된 손해에 대해 선금 및 기성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상기 손해의 산정과 보상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협의 불가 시 중재 및 분쟁조정절차를 우선 적용 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판단의 순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검사검수조서 - 지출 증빙자료 - 산출내역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이전 취득한 고유한 지식재산권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 및 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 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입찰과정에서 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및 관련 비용의 지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9조는 국제회의용역 수행에 활용하거나 산출된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의 소유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무단으로 소유, 활용함으로써 계약이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조문별 세부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출된 미술, 음악, 디자인 및 특허 등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소유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국제회의용역의 특성상 계약이행 과정에서 미술, 음악, 디자인, 저작물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지식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성실히 이행한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발주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창작물이므로 발주기관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창작물 생성의 직접적 원인행위의 계획과 비용을 지급한 발주기관에도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계약법령 등과 동일하게 용역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본 용역계약 이전 계약상대자가 기 보유 및 생성한 지식, 정보, 자료 등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계약상대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당해 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의 판단 대상은 계약목적물 완성 이후에 생성되는 지식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였다.
- 제3항 : 본 국제회의용역에서 활용 필요성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사용을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사용권리를 획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지원과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제3자가 보유한 정당한 지식 재산권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계약이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 역시 제3자의 특허권 등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성공적 이행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용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협조, 지원 및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한 제3자와 협의 및 정당한 사용대가 지급 등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사용 요구하여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제4항 :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사용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당해 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제1항~제4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결과보고서, 사진집 등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 <li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예시 1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산출한 행사 결과보고서, 사진집, 무대 디자인 자료집 등에 대해 이는 발주기관의 과업 설계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이므로 관련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의 단독 소유할 것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본 국제회의용역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해당 업체의 동의와 대가지급 없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p>☑ 예시 2) A,B,C,D 4개 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A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p> <p>- OO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인 A기업과 기술협상을 진행하면서 탈락한 C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된 무대디자인과 전시회 기획안이 발주처가 생각하는 결과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함.</p>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서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한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시 1과 같이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단독 소유 주장은 적정하지 아니함. •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속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기술지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지급과 사용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 예시2에서 발주기관이 입찰 및 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업체의 기술제안서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C기업에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 계약상대자와 탈락한 업체와의 제안서 활용 협의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기관이 본 표준계약서 제19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탈락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 중 활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 협의 및 필요한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활용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적정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역의 이행 및 결과물에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그 이전부터 소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한 특례로 특허권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고,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독 소유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같이 국가안보차원 수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 상기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지분 등을 결정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9. 특허권 등의 사용" /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등)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지식재산권 귀속 조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역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임.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귀속주체와 지분 등을 협의할 수 있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 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 또는 특수조건(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지분 관련)
2	지식재산권 귀속 비대상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에 대한 귀속 주체, 지분 협의 시 당초 계약상대자에게 속한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은 당해 용역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 또는 특수조건(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지분 관련)
3	지식재산권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용역수행 이전부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제안서 등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사용 요청할 경우 사용을 허용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특정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 사용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반 편의를 제공 및 알선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함 당해 용역 제안서 평가 시 탈락한 업체의 제안서 활용은 발주기관이 해당업체로부터 제안서 활용 허락과 관련 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활용토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 또는 특수조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지분 관련)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단,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수행사실과 지출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차액의 조정, 발주 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더라도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1. 계약이행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과업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문서(계약당사자의 기관 공문)로 관련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해당 과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미수행한 경우(단, 미수행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행사 참가자와 연동하여 산정되는 항공권, 식음료비, 기념품 등 참가자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단, 참가 인원이 축소되어도 최소인원 보장조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기타 관계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 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기준(비용인정 요건 등), 정산 방법 등의 절차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정된 후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는 본 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해당 사후정산 요건을 명기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서에 미리 정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시 또는 계약체결 당시 이를 제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요건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된 금액을 한도로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각각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적용할 수 없다.

⑧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0조는 국제회의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점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업예산 총액에 대하여 회계감사식의 사후원가검토 등을 적용하는 등 계약금액 확정의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표준계약서 제3조제10호의 정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 역시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임의적 사후정산 요구는 계약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부적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특히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통하여 사후정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는바, 이를 활용하지 않고 편의상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에서 임의적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현행 공공계약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후정산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 또한, 발주기관(또는 원가검토기관)의 회계감사식 사후정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증빙자료 작성 부담 등 계약상대자가 경험하는 과도한 부담과 고충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이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특별한 사정’을 오남용하여 무분별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계약법령 참조 규정에 따른 사항과 국제회의용역 계약 운영 사례를 통해 계약당사자 간 최소한 합의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어떠한 이유에서도 단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차액을 조정하거나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제3항 : 상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집행 내역서에 대한 검토의 주체는 계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이므로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규정하였다.
- 제4항 :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산 내용(정산 대상 비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이 계약서에 첨부토록 규정하였다. 이때 정산 대상 비목으로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정산 대신 비목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 제5항 : 예정가격 결정과 연계한 사항으로 사후정산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공개되어야 하는 바, 해당 시점 이후 사후정산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특약으로서 해당 요건을 무효로 함을 규정하였다.
- 제6항 : 사후정산을 통해 실행예산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 역시 당초 계상율을 적용토록 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반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제7항 :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후정산을 통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8항 : 사후정산을 포함하여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은 사업예산의 예산과목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규칙의 적용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에 따라 집행되더라도 공공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제회의용역인 경우 이 계약서에 따른 사후정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총액확정계약의 원칙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정의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1항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계약금액 중 사후정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판단이 필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체결 후 전체 행사 참석인원 중 국내 참석인원은 확정되었으나 해외 자매결연기관 100명의 참석이 해당 국가의 정세 불안정 등을 사유로 불분명해지자 발주기관에서 왕복 항공권비, 호텔 숙박비, 리셉션 식음료비, 만찬 식사비, 참석자 기념품 비용을 실제 참석인원 기준으로 사후정산 요구하는 경우</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총액확정계약으로서 '인원 변동'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의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련 계약법규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 •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실무적으로 과업내용 변경으로 수정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 처리 지연 등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에 정산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는 정산 대상 비목이라 할지라도 해당 비목 전부에 대한 정산이 아닌, 사정이 발생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을 의미함. • 예시1을 적용하면 산출내역서상 경비로 계상된 전체 참석자의 항공권료, 숙박료, 식음료비, 만찬 식사비, 기념품비 전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변동이 예상되는 해외 참석자 100명에 해당하는 비용만 정산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음. - 행사 구체적인 진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식음료비, 만찬 식사비 등에 환불이 불가능한 최소보장인원 조건 등을 약정한 상태라면 실제 참석(이용)인원이 미달 되더라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과 동일한 상황에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체결을 이유로 본 계약서의 미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제23조(지방계약법 제27조)에서 정한 개산계약 사유에 국제회의용역(MICE용역 등 행사대행용역 포함)은 해당되지 않음.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계약의 내용상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개산계약과 같이 사후원가검토를 통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 근거는 개산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에 유의하여야 함. • 이때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비목의 단가를 확정할 수 있으나 사전 계획한 인원/수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특히 동일 및 유사 용역의 경우 이전에 집행한 비목별 정산 내역이 존재함에도 동일 비목을 사후원가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산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81조(개산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②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후정산의 적용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적용한 '특별한 사정'이 부적정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1) 당초 승인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단가 5만 원에 구매(지급)된 기념품에 대해 행사 종료 시점 거래가(최저가)를 기준으로 4.5만 원으로 적용하여 차액(기념품 100개 기준 50만 원)의 반납을 요구</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사정'을 사유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2) '특별한 사정'을 사유로 OO 발주기관에서 항공권료, 식음료비, 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요구하면서 변동 초래 요인인 참석인원이 다른 집행 비목의 지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을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정 비목의 단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후정산은 구매(지급) 사실 여부에 따라 미구매(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의미하며, 예시1과 같이 단가 변동, 최저가 존재 등의 이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조달청의 해석기준에서도 이를 예정가격조사 또는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기본적으로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나, 동조 제7항에서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본 표준계약서 적용 시에도 해당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시2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후정산 대상 비목의 계약금액 비중이 크고 사후정산 유발요인이 전체 사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총액확정계약 속성상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정산은 불가하며, 본 표준계약서 제20조를 통해 약정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행되어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사정에 따라 대상 비목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정산은 집행 사실 여부에 따라야 하며, 승인된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집행된 금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으로 정산이 가능한 비목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비목의 집행 내역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정산은 개산계약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조달청훈령 제1567호) 65-2-1
--------------	--

③ 사후정산 비용의 계약상대자 부담 요구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정산이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에 대한 사후 정산을 요구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가검토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원가검토보고서 제출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정산을 위한 원가검토 업무는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은 이러한 편익을 위해 원가검토 업무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규 「예정가격집행기준」 제32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역할임을 유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집행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④ 사후정산의 구체적인 기준 협의 및 요구 시기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4항~제5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산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 발주기관이 해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계약체결 시점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사후정산을 계약체결 이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한 정산기준과 방법을 제시 하면서 수용할 것을 요구</p> <p>- 3특히, 정산기준으로서 경비에 해당하는 항공권과 숙박비를 현지 호텔에 지급한 외화(달러)의 환전 환율이 아닌 계약기간 내 최저환율로 적용할 것을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는 입찰공고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준과 비목별 비율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예정가격과 연계한 사항으로 본 표준계약서 제2항 각호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입찰공고 시점에 발주기관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정산 대상 비목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예시1과 같이 행사 참가자와 연계하여 항공권, 숙박비 등에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점에 사후정산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준계약서 제20조의 기본 제정 취지는 국제회의용역은 총액확정계약이 적합한 계약으로서 사후정산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전제로 함. 사후에 요구되는 정산 대상 비목의 정산기준과 방법이 계약당사자 중 발주기관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된 경우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당특약으로 무효화 될 수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1조(변경계약 체결)

⑥ 사후정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6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정산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되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도 당초 계상된 비율을 적용하여 추가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거부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용역을 완료한 후 OO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산 대상 비목으로 정한 항공권에 대해 정산을 실행한 결과, 유류할증료 증가로 당초 산출내역서상 책정된 항공료(30백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추가 집행되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지급하기로 함.</p> <p>- 이에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추가 집행된 5백만 원에 대해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일반관리비 8%와 이윤율 10%를 적용하여 각각 40만원, 54만원을 추가한 94만 원을 함께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존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정산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역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여 함께 정산하여야 함. 다만, 증가한 집행금액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에 따라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예시1의 발주기관이 낙찰 차액 등으로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여력이 있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상대자인 A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정산 특성상 감액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예상되나 증액 상황이 발생하면 용역 완료 이전 당해 사업예산에서 지급 가능 여부를 계약당사자가 점검하여야 하며,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과업량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⑥ 계약 변경 절차 적용 사안에 대한 사후정산 요구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7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계약체결 이후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 행사 진행을 위해 구매·설치해야 하는 장비 가격이 계약체결 시점 대비 20% 이상 인상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OO 발주기관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으로서 해당 비목에 대한 일괄 사후정산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계약일반 조건으로서 국가계약법을 등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하위 시행령과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 대상 비목 역시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변경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인원/수량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집행된 금액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국고/지방 보조금 사업에서의 사후정산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제8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국제회의용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 발주기관은 △△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OO공사의 국제회의유치지원사업의 민간 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방보조금 500백만 원을 지원받음. 이중 200백만 원을 국제회의 행사 진행을 위해 PCO업체인 A기업과 조달청을 통해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함.</p> <p>- 이에 보조사업 관리기관인 OO공사는 보조금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정산하도록 요구하면서 행사대행용역으로 집행한 20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을 요구</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대행용역은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정산이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보조금 관리 규정상 당해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 용역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집행 내역은 계약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제회의용역 사업예산의 과목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용역계약 이면서 총액확정계약인 경우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같은 방식의 정산 대신 계약집행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등으로 정산에 갈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제정 취지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실행을 위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받으나 국가 또는 지방 계약법령에 따라 집행된 용역계약 등은 공공계약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용역인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입찰공고 시 계약방법 및 사후정산 요건 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확정계약 체결 여부 확인 사후원가검토부조건계약으로 본 계약 미적용 주장 시 사후원가검토 대상이 되는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비목의 적정성 확인(계약체결 이후 정해진 단가, 수량, 인원 변동 등에 따른 금액 변동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 사후원가검토계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 계약으로서 본 계약서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 사후정산 요건, 기준, 방법, 절차 등 입찰공고문 제시 여부 확인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후정산이라 할지라도 입찰 공고 시점에 사후정산 시행 요건, 기준, 방법, 절차 등 제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문 기술협상서 가격협상서
2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 대상이 항공권료, 식사비, 음료비, 기념품비와 같이 인원 및 수량과 직접 연계하여 증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일부 비목에 한정된 것인지 확인 계약체결 이전 정산 대상 비목별 구체적인 정산 기준, 방법 및 절차를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 문서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정산방법을 협의한 문서 (기술협상서, 가격협상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 등)
2.1	변경계약 사유의 사후정산 요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변동, 최저임금 변동,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유임에도 사후정산 대한 포함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2.2	보조금 사업의 사후정산 요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되는 국제회의용역에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총액확정계약으로서 본 표준계약서 사후정산 규정 적용 확인 	-
3	정산 비용부담 주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내역서상 관련 사후원가검토 비용 계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4	정산금액 확정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사후정산 과정에서 경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감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상율을 적용하여 병행 정산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정산 금액 결정 내역서 (정산 확정 금액의 산정 근거)

-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인 행사용역을 완성한 후 제16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⑥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1조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완료한 경우 본 표준계약서 제16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사에 합격하면 그 사실을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계약법령 등과 달리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계약상대자에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청구서에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지급 계획이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협력업체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열위에 있어 계약상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수급사업자에 적기 대가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계약상대자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한 경우로서 제16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사에서 합격하면 그 사실을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을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5일 이내의 기한에 대가지급을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5일을 추가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협력업체와 같이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해 대가지급과 관련한 지급 청구 및 수령 여부 등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 제4항 :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추가로 3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기관이 지급 의무 이행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항 : 계약상대자가 하자 있는 대금청구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하고 시정조치 후 재청구 시까지는 지급기한에 산정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발주기관의 대금지급 업무에서 기한 준수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항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 없는 대금청구를 받았음에도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기한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제1항~제2항, 제6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와 대가지급 기한 연장 특약에 대한 협의 없이 발주기관이 임의로 대가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합격 후 발주기관에 계약대금 300백만원 지급을 청구함(청구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p> <p>- A기업이 대금 청구서를 송부한 다음날 발주기관은 내부 예산배정 문제로 당초 지급기한인 10월 26일(수)까지는 지급이 어려우므로 11월 9일(수)까지 지급하겠다고 통보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시와 같이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 설정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한 연장 특약 설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하며, 예시와 같이 발주기관의 일방적 주장 또는 임의로 설정할 수 없음. 만약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대가지급 기한 연장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통보한 바와 같이 11월 9일 대가에 지급한다면, 당초 지급기한인 10월 26일 다음날인 27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14일에 대한 대가지급 지연 이자 485,589원*을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대가지급 지연 이자 = 계약금액*한국은행 대출 평균 금리*(지연일수/365) = 300백만원*4.22%*(14/365) = 485,589원 ※ 계산된 지연이자는 예시이며 실제 계산은 대가지급 지연이 발생한 시점의 해당 월별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평균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기간 계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57조의 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당일 0시에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시점을 근무 개시시간으로 하더라도 당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으나, 예시와 같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을 불가항력 사유로 오남용하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4. 대가의 지급",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대금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 제16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2	대금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5일 이내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 대금지급 * 대금지급 기한 일자 계산 시 대금 청구를 접수한 '초일'과 '토요일/공휴일' 제외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청구 기한 연장 관련 설정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서 설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5일 이내에서 지급 기한 연장 특약 설정 가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특수조건(대금청구 기한 연장 관련)
3	대금지급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대금지급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에 지연일수와 지연시점(통상 지연된 날이 속한 '월'의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이자 = 지연대가 * 평균대출금리 * (지연일수 / 365) * 지연일수는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량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할 수 있다.

③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특성상 하도급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가지급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 적정성 관점에서 국제회의용역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요청을 승인한 경우 하도급 대가지급 이행이 원활하도록 발주기관과 수급사업자의 일반적인 확인 및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지로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대금 지급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리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결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에게도 15일 이내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5일 이내 이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본 용역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열위에 있어 계약상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보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보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지급 정보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을 반영하였다. 이는 하도급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인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사업자간 직접적인 계약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를 통해 간접적 확인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 제3항 : 하도급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의무 또는 선택을 규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지로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대가지급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정의)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2항~제3항 •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1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고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인 OO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이행을 완료한 A기업에 검사 및 대금청구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4일차인 10월 21일에 대가 지급을 완료함.</p> <p>- OO기관은 대금지급을 하며 A기업에게 하도급업체에게도 1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이러한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내부 사정을 사유로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가지급을 완료하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이러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가지급 기한 설정과 지급 사실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 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계약상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계약상 약정기일인 15일을 이미 경과한 바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 • 국제회의용역의 특성상 계약상대자인 PCO업체와 다수의 단위 역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협업적 구도를 형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에 있어 '협력업체' 개념을 적용하였으나, 상기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해설에서 제시한 하도급 승인 대상 계약인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국제회의용역은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른 하도급 적용 대상 역무는 아니므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업체 간 대가지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등의 일정으로 계약완료일을 경과하여 계약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등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 시점에 본 표준계약서 제22조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음. • 본 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에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4. 대가의 지급",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 이행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은 제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여부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2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후 그 내역(수량,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송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아래 각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유의 적용은 제18조의 불가항력에 준하는 현저히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본 계약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도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되어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본 계약을 통해 이행된 부분은 제외)으로 새로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연례행사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 제24조에 따른 용역의 정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18조 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4조에 의한 용역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타용역 금지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금액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일로부터 발주기관이 해제 또는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일수)에 일할 계산한 계약금액(총 계약금액/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3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제 등의 절차 적용으로 인하여 공공계약법령 상 보장된 권리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등 징벌적 처분의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제23조의2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채택하였다.
-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이행 및 관리의 가시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역시 발주기관에 대한 선금 등의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계약 관계 종료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해석상 쟁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제23조의3은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약금액, 기간의 대폭적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계약상대자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에 투입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타 용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부담을 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관계 종료 시 타 용역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과도한 용역 정지 기간 설정 후 책임성 없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23조 제1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계약상대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8가지 경우를 특정하고 있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지체상금이 시행령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④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지체없이 시정된 경우 제외), ⑦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⑧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23조의2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객관적 상황 및 조건 등 사정이 달라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약이행 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유로는 용역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물리적, 환경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본 용역 관련 국내외 협업기관과의 협력관계 단절 또는 발주기관의 상위기관 등에서 행사 및 회의계획을 취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제23조의2 제2항 : 제1항의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변경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용역수행기간 또는 행사기간 외 과업 내용 변경 없이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제24조에 따른 용역의 정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라도 기간의 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성이 완화 또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관계의 지속하는 방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3조의2 제3항 :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으로부터 해당 결정일까지 소요된 비용(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등) 중 선금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3조의2 제4항 :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이를 상환토록 규정하였다. 이때 발주기관이 미정산 잔액에 이자는 가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제23조의3 제1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지속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역시 계약 관계의 종료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제23조의3 제2항 :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제23조의2와 동일하게 대가 및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3조의3 제3항 : 당초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타용역 투입 금지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손해를 충분하기 보상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금액과 별도로 손해를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내용서 및 용역수행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른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국제회의의 준비를 위한 행사장소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음. 이에 발주기관은 통지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용역 착수를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 내용과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결정 사유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특히 예시1과 같은 상황은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2회에 걸쳐 이행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용역을 일정부분 이행하고 결과물이 산출되었을 경우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용역 착수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없었던 상태와 동일하므로 계약해제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따른 착수 및 완료 일자 준수 여부가 결정적인 만큼 행사 일정 지연 등에 따른 착수, 보고 일자 등의 변경이 예상되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해지"

②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제2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3개월간 회의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주기관의 상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회의 주최기관인 OO부에서 회의계획 취소를 통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발주기관에서 A기업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함. - A기업은 행사계획 취소가 주최자인 OO부와 주관자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3개월간 수행한 용역 관련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계약당사자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함. 따라서 발주기관의 상위 중앙행정기관의 사정변경, 국제회의의 초청국의 정세에 따른 회의 불참 등과 같은 상황은 과업을 계획 및 발주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함. -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목적으로 회의의 취소를 '지시/명령'한 경우에는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불가항력 사유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권고'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 사유가 될 것임. 따라서 예시1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를 지급하여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한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는 있겠으나,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니라 하여 손해보상 부담에서 벗어 나는 것은 아님.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손해 산정 방법 및 절차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항~제4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 산정 시 장비 철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계약상대자 A기업은 총 계약금액 300백만 원 중 계약 해지일 이전 집행비용인 170백만원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함.</p> <p>- 그러나 발주기관은 A기업이 신청한 170백만원 중 당초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보다 앞당겨 투입한 설비의 철거 비용 20백만원은 제외한 150백만원만 손해 산정 범위로 인정하며, 선금으로 100백만원을 기 지급하였기에 최종적으로 50백만원만 지급할 것으로 통보함. 또한, 발주기관의 내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이후 1달 이내 입금할 예정이라고 통보함.</p>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실제 용역 이행을 위해 지출한 범위 내에서 대가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예시1과 같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보다 앞당겨 투입한 설비라 할지라도 당시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지와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면 발주기관은 설비 철거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과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잔액만을 지급하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실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등의 사후처리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과 달리 진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지와 승인을 받아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④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제4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용역 정지 기간 경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전체 회의 일정 5일 중 마지막 2일에 해당하는 전시회 일정이 공동 개최하는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과업 내용을 축소하고 계약금액을 600백만원에서 350백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함. ☑ 예시 2)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을 이행하던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 정지 요구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계약기간 8개월 중 5개월 이상 지속되자 용역이 재개되어도 정상적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함. ☑ 예시 3) 용역 정지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 4개월 중 2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곧 용역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한 후 2개월간 행사인력과 장비를 타 용역에 투입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용역수행을 준비할 것을 통지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대자인 PCO업체 역시 당초 체결한 계약규모(기간 및 금액 등) 등이 현저히 축소 조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어렵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동등하게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상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에 투입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계약기간 중 타 용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용역 정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기 계약 관계 종료 시 타 용역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발주기관은 과도한 용역 정지 기간 설정 후 책임성 없는 계약 해제/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기 계약 관계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정도가 아닌 용역 정지라면 용역재개 시점에 당초 계획한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용역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유지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용역 정지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정지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또한, 제1항 각호에 따른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과 장비 등의 타 용역 현장 투입금지 요구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외 일할 계산한 계약금액에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요청일로부터 발주기관이 해제/해지를 결정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귀책 당사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귀책 당사자를 판단하여야 함. - A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B : 사정변경 사유로 인한 경우 - C :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후 처리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A	계약상대자의 귀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른 정상적인 용역 미이행 • 관계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이행 안정성 저하 • 입·낙찰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로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지위 불확실 • 기타 계약 내용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정상적 용역 이행 완료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B	사정변경 사유로 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변화, 정책/법률 등의 변경 등에 따른 불가피한 행사 취소상황 등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C	발주기관의 귀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권리를 크게 제한받아 정상적 용역 이행이 어렵거나 현저한 용역 규모의 축소와 과도한 용역 정지 지속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2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이루어지면 발주기관은 통지 시점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함(상계 처리 가능). -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인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현장 유지 요구를 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보상)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 특약조건 - 산출내역서 - 지출 증빙자료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용역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력(행사참가인력 포함), 시설의 이용, 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정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를 정지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서, 관련 계약문서 및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제5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4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종결에 이를 수준은 아니나 정상적인 용역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특히 계약상대자) 모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서 발주기관이 용역을 정지한 경우 기 지출한 비용 등 발생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정지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손해부담 의무를 부과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4조의2는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관리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 이는 계약상대자 역시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계약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용역 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협상력의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제24조의2 자체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문별 해설

- 제24조 제1항 : 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계약 관계 지속이 계약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를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용역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용역수행이 당초의 수행계획과 상당한 수준과 범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기타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지시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기본적으로 용역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용역 이행의 적정성과 안전 및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는 용역의 당해 용역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계약의 이행이 재개되는 바 이후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현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제24조 제2항~제3항 : 제1항에서 발주기관에 의한 용역의 정지 결정 권한을 부여한 바 계약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정지기간 동안 최소한의 유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를 정지가 해소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4조 제4항 :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용역을 정지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별도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금융기관 평균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4조의2 제1항 :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4조의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발주기관은 14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제24조의2 제3항~제4항 : 상기 과정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정당한 계약이행의 의무를 고지하고, 발주기관은 그러한 고지의 내용 중 수용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통보하여 공공계약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과 내용의 성실한 이행 의무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용역 정지 사유 및 기간에 대한 통지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정지 사유 및 기간에 대해 구두로만 통지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사전 부대 및 홍보 행사를 포함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상위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최기관인 OO부의 계획 변경으로 본 행사인 국제회의 개최 일정이 2주가량 지연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수행을 정지할 것을 구두로 통지함.</p> <p>-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용역 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 확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발주기관은 단기간(2주) 내 용역이 곧 재개될 것이므로 공식적 통지 절차는 필요 없음을 구두로 회신함. 다만, 2주 이상 정지가 계속되면 본 표준계약서 24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이메일(e-mail)로 회신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에 의한 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일상적인 용역 및 계약관리를 위한 통지 절차에 더하여 본 표준계약서 제24조 제2항에서는 발주기관이 정지 사유와 기간을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통지의 방법은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른 방법 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시1과 같이 문서로 보완되지 않은 발주기관의 용역 정지 사유 및 기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제5조에서 긴급한 통지 및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계약당사자 간 지정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시1에서 이메일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 효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문서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의 정지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거나 인력/시설/장비 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계약이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통한 계약 관계의 종료 대비 그 정도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가 많음. 이러한 측면에서 용역 정지 기간이 1~2주일로 짧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 일정 조정을 통해 공식적인 통지 절차 없이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예상한 정지기일과 달리 정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예시1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이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에 대한 손해 산정 기간을 발주기관이 용역의 정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지 기간에 대한 기산 여부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통지 절차는 진행할 필요가 있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

② 용역 정지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제3항~제4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이 정지되어 정지 사유 해소 후 손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거부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을 6개월(180일)간 400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일반관리비 26.5백만원) 수행하던 중 3개월(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5개월(75일)간 용역을 정지할 것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통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A기업은 용역이 재개하자 발주기관에게 용역 정지기간인 75일 동안 인력, 장비, 시설 및 행사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상기 통보에 따라 A기업은 발주기관의 용역 정지 통보(본 표준계약서 제5조의 통지)일로부터 2.5개월간 회의의 관련 투입인력, 장비 및 설비의 유지와 무대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음. -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을 재개하는 시점에 용역정지 기간 인력, 장비, 시설 및 행사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정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입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은 용역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현장에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역무를 수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장비 점검 등을 위한 인력, 관리 물품 등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 지급이 필요함. 따라서 예시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26.5백만원에 대하여 용역정지 기간인 75일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11,041,667원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용역의 정지 일 경우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15일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233,333,333원(105일*(계약금액*(400백만원/180일)))에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금융기관 대출금리 4.21%(‘22년 7월 기준)를 적용한 403,699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본 조는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용역 정지에 따른 사후적 비용 및 손실 보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용역 정지 등의 오남용으로 계약당사자 모두 용역 이행의 안정성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항으로 볼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정지로 인한 손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이 정지하였을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유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이후 용역을 재개하여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구체적 변경계약 조건 등을 반영하여 본 표준계약서 제15에 따라 별도 산정되어야 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

③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요청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제1항~제4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용역 정지 후 용역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행 중이던 국제회의용역을 2개월간 정지하고 이후 용역을 재개 하면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안정적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비용을 반영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한 내 계약이행을 완료할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업은 용역 정지가 계약상대자 자사의 귀책이 아닌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변경계약 체결을 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발주기관은 변경계약 체결 요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하고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용역 정지를 통보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용역 정지와 달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용역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예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정지한 상황으로 용역 정지에 따라 용역의 안정적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발주기관이 정지를 요청한 정지기간 2개월(61일)과 변경계약 회신 지연일 31일 (총 지연 기간 45일 중 회신 기한 14일 제외)을 더한 92일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 비용을 반영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용역이 정지되어 계약 상대자가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관련 비용을 추가 조정해야 하는바, 신속한 용역 재개 및 계약 완료를 위해서는 용역 정지 후 추가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 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용역 정지 사유 해당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확실하거나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정적인 운용에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용역 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2	발주기관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용역정지를 결정한 경우 정지 사유 및 기간을 통지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3	정지사유의 귀책 당사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통보한 용역 정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인 경우 용역 재개 시점에서 계약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계약당사자 귀책이 아닌 경우 용역 재개 시점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과 금액 조정한 변경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4	정지기간에 대한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용역정지의 경우 발주기관은 '정지일수*(일반관리비/계약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산출내역서
5	용역정지 해제 후 계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정지가 해제된 후 최소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비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통지문서(공문 및 근거) 산출내역서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월별보도자료)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단,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지식 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본 계약 이전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과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5조는 발주기관이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한 기술, 지식, 자료, 결과물 등에 대해 지식 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이의 활용과 공개에 있어 공동 소유권자인 계약상대자의 승인 권한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국제회의 및 행사를 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적 중요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나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또는 기관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계약상대자에 기밀 사항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산출한 보고서, 정보 및 기술지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해 용역의 계약목적물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그 결과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목적물인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이전 생산, 보유한 보고서, 정보 및 지식기술은 본 용역 이전 독립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는 지식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 제2항 :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지자체 등의 공적 업무와 연관된 국제회의 및 행사를 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적 중요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정보나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또는 기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기밀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 제3항 :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소유인 기술지식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용품의 가격과 같이 공표되어 있지 아니한바 당사자 간 당해 용역계약의 목적과 취지, 자료 활용의 목적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 제4항 :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계약종료 후에도 과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에 대한 복사, 이용 및 공개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1항, 제3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 일부를 복사, 이용 및 공개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발주기관인 OO기관은 국내 문화재에 대한 전시회 진행 결과보고 당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제작한 전시물에 대한 3D 안내물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상 공개 계획을 A기업에게 통지함.</p> <p>- 그러나 A기업은 해당 3D 안내물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3D제작 SW를 활용한 것으로 영구 공개는 불가함을 밝힘.</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지식 등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음. 따라서 예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승인 없이 발주기관 임의로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상기 사례에서 해당 3D 안내물을 제작한 SW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작한 자료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문화재 관련 정보와 자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결과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발주기관이 공개를 요청하는 결과물이 SW 자체가 아닌 그 정보만을 담고 있는 영상과 같은 결과물이라면 공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술지식의 복사, 이용 및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만약 계약상대자의 고유한 기술지식이 아닌 당해 용역계약의 목적물로서 과업내용서 등에 해당 기술지식 또는 포함된 결과물을 계약목적물로 명시하고 관련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계약상대자의 승인이 아닌 협의를 통해 별도의 대가지급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②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한 활용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의 기밀사항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A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5개국의 경제안보를 다루는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동향, 원부자재 인플레이션 전망, 각국의 전략비축물자 관리 등에 대한 경제, 무역, 수출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음. ☑ A기업은 당해 용역과 유사한 국제회의용역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진행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이와 용역 완료 함께 행사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폐기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원부자재 수급 동향과 전략비축물자 관리정보는 유의해서 파기할 것을 통지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 중 국가기밀 또는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계약 전후 모든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예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된 국가안보 관련 국제회의 용역의 이행 사실과 관련된 정보 수준이라면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행사용역 진행 사실이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비공개 진행되었거나 관련하여 다루어진 정보가 국가기밀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적인 정보 공개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국가기밀 및 안보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등에 구체적인 비밀 유지 내용 및 항목을 명시한 서약서 첨부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③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4항~제5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 및 관리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A기업은 회의 참석자를 사전 접수하면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증명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수집, 저장 및 활용하였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종료 전 지금까지 본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를 통지하면서 용역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회의 참석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A기업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디지털 파일 등을 모두 파기 처리하였으나, 용역 관련 결과물 중 하나인 행사안내장 발송목록 파일에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송부함.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등이 있음. 따라서 상기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디지털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정히 관리하지 못하고 발주기관에게 결과물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와 같이 계약종료 시점에 결과물 파일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계약당사자 모두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것임.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①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에 대한 복사, 이용 및 공개 관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기술지식 대상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계약목적물에 포함된 결과물인지, 계약상대자가 용역이행 과정에서 활용한 기술지식인지 판단 당해 계약목적물에 포함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승인을 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국가기밀 및 안보 등과 관련된 자료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가 복사, 이용 및 공개할 수 없음. * 비밀을 유지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는 입찰공고문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관리 내용 등을 공표하고 이행토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기술지식 활용 승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해 그 이전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속한 기술지식이라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기술지식의 복사, 이용 및 공개가 결정되었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기술지식의 시장거래가격에 기반한 대가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②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 관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당해 용역 관련 개인정보 수집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관리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p>-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p> <p>-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p> <p>-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p> <p>-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p> <p>-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p> <p>-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용역수행 및 종료시점에 개인정보처리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계약종료와 동시에 관련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 외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디지털 파일을 폐기 처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결과물에 개인정보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모두 삭제 처리 후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 선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서약서, 합의서 및 관련 평가자료 등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후 1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그 이행의 의무가 면제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6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능력을 평가받는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제안한 바와 같이 이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낙찰과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실행 가능성 없는 제안을 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받은 기술제안서에 반영한 내용과 평가기준 또는 항목에 따라 평가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이를 그대로 투입 및 활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에 유리하도록 과업 제안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빈번하고 과도한 과업 변경 요구를 통해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요구하는 등 발주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용역수행 방법, 투입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계획, 수행 일정 계획 등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받는 기술제안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기술제안서에 반영한 내용과 평가기준 또는 항목에 따라 평점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이를 그대로 투입 및 활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에게 평가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의 요소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실한 내용일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회의용역 계약 실무에서는 발주기관의 사업 및 계약관리 경험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받은 사실 또는 기술협상의 내용과 달리 용역을 수행하여 부실한 품질, 계약금액 증액 조정 요구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능력을 평가받아 낙찰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다.

- 제2항 :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제 계약상대자가 보유 및 제시한 기술, 지식, 인력, 시설, 장비 및 예산을 활용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형식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평가 요소 및 수행조건이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제시한 서류 및 사실 등에 대해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낙찰자 선정 시 평가받은 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 의무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 제안했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평가를 위해 '회의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평가 분야 점수를 위해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한 1회 개최가 아닌 2회 개최할 것으로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러나 계약 이후 발주기관이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회 2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된 A기업은 해당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전시회 개최에 4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예정가격의 85% 수준으로 가격투찰하여 계약한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회 개최를 원할 경우 추가과업으로서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을 요구함.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 제안된 전시회 2회 개최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으로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 전시회 준비에 착수할 것을 통지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수행을 요구한 내용 및 관련된 내용으로 당해 입찰의 투찰가격 범위 내에서 수행을 전제로 함. 따라서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과업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안내용은 입찰가격 범위 내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상기 예시1과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A기업이 입찰한 투찰가격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면서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수행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가격평가에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계약체결 이후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추가적인 제안내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미포함을 주장하며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함. 계약문서로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대가 없는 추가 과업 요구가 아닌 기본 수행해야 하는 내용임을 판단할 수 있음.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제안서에 추가 제안하였거나 제안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술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당해 계약 포함 여부, 구체적인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안발표에서 구두로 제안한 내용 역시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므로 그 내용을 기술협상서에 포함하여 과업으로 확정되면 당해 입찰의 투찰가격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② 부당특약이 포함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따른 계약이행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제3항
<p>적용 필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특약이 포함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발주기관은 기술 제안서의 평가항목으로 회의 일정 중 1일차 리셉션과 2일차 만찬 등에 대한 식음료비 협찬 규모를 평가에 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 A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30백만원 규모의 협찬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서에 반영하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함. -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상 만찬과 리셉션 등 식음료비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제안서 A기업이 제시한 협찬으로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 </div>
<p>해석상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제안서에 입찰자가 제시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입찰공고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입찰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된 경우에는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예시1과 같이 예정가격에 포함된 식음료비를 협찬 명목으로 사실상 계약상대자인 A 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대가 없는 과업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대가없는 과업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수행 및 평가조건 등은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으로 무효화 될 수 있음.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모두 사후적으로 상기 사례와 같은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공고 이전에 과업내용서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협찬, 기부 등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부담을 초래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음. 본 표준계약서 제6조 계약금액 확정 조항과 연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이전 입찰에 부칠 내용과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발주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과업수행 내용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제안서, 기술협상서/가격협상서 등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포함하여 수행할 과업 내용을 확인하여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계약체결 이전 계약당사자가 기본 제안한 내용(발주기관의 요구)과 추가 제안한 내용(계약상대자)을 명확히 확인하여 용역수행계획에 반영 다만,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한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계약상대자의 이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항으로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반영된 과업 내용의 이행 여부 점검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 등에 반영된 과업(제안)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최초 입찰공고 된 과업내용과 예정가격 범위 등 계약조건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비용요구 없이 수행되어야 함.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각 10일의 기간을 두고 2회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계약 해지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3	협의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간 제안내용에 대한 공공계약법령상 적합성과 대가 없는 과업 해당 여부 등을 조사 및 협의하여 조정방안 마련 협의 및 조정 미성립 시 본 표준계약서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①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용역이행보증증권(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 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어 발주기관이 검사 및 인수 후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없다. 단, 1년 이내에 국제회의용역 완료 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인쇄물 등)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단 하자보수의 범위는 검사 및 인수시점 제출한 결과물에 한하며, 발주기관이 새로운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 불확실성이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이행 보증과 하자담보 관련 계약관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계약은 다양한 단위 역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 준비 및 실제 국제회의 및 행사를 수행하는 복잡성, 전문성,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이러한 본 용역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상대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과도하거나 용역이행보증증권에서 보증하는 계약금액이 큰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부 부담 역시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수준을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이상, 용역이행보증증권이 경우 계약금액을 40/100이상을 한도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의 마련과 보증수수료 납부 부담이 한정되도록 하였다.
- 제2항 : 본 용역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이후 완료된 용역결과물에 기능, 성능, 품질 등의 지속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본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 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은 국제회의 또는 행사인바 해당 회의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검사와 인수를 통하여 계약대가가 지급완료 되었다면 사실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하자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목적물인 회의 또는 행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문제의 내용과 속성에 따라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부담 의무를 면제하였다. 다만 본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이행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보고서, 기획물 등 인쇄물에 대한 물리적 하자, 내용적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인 1년의 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할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하자보수 및 보완의 대상은 검사 검수가 완료된 최종 결과물에 한정하며 계약종료 이후 새로운 과업이행이 필요한 사안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제1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을 발주한 OO기관은 A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또는 계약금액 300백만원의 15%인 4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A기업은 보증기관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시도하였으나 창업 2년차로 업력이 짧아 보증기관의 발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증권 발급이 거절되었으며, 현재 회사의 내부 자금 여건 상 4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발주기관에게 계약보증증권 제출을 계약이행보증각서로 대체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15/100을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전체 계약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 예시에서 A기업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15/100에 해당하는 45백만원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A기업이 주장하는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 운영 사정 등은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 각목에 따른 보증서 발급 가능 기관(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p>*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체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p>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보증금을 납부)하는 용역이행보증서(계약이행보증증권)를 제출해야 하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경우에는 40/100이 적용되지 않고 15/100가 적용됨.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체결을 제외하고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② 국제회의용역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제2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계약에 따른 회의와 행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에도 1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검사 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당해 용역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차년도 동일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1년간 하자보수를 담당하면서 차년도 용역 발주 준비 지원을 요청함.</p>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SW용역에만 하자보수 규정이 존재하는 점,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회의용역은 기타용역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용역계약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더욱이 국제회의용역은 회의 및 관련 행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모든 결과물이 완성 및 종결되므로 사실상 하자보수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회의 및 행사 등의 실행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사진집, 전시회에 활용된 판넬 등 유형의 결과물이 있고, 이 결과물에 변형, 탈색, 자연 파손 등이 일어난다면 물품제조계약 등에 적용되는 1년간의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용역계약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적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물리적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인정하더라도 예시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차년도 용역 준비 지원은 하자보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구 자체가 부적정하며, 당해 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차년도 용역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행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정함.
관련 유의 사항	-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이행보증 방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현금납부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40/100 이상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어야 함. •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② 국제회의용역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하자담보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보수가 하자담보 대상 인지 확인 - 당해 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이 회의 및 행사 진행으로 완성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보수 대상이 아님 - 회의 및 행사 진행을 정리 및 분석한 보고서, 사진집 및 자료집 등 물리적 유형의 결과물에 한해 1년 이내의 하자보수 적용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2	하자보수 대상 및 역무의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하자보수 조항이 적용된다면 적용 대상을 결과보고서, 사진집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1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자연 파손, 변형, 탈색 등 하자보수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여야 함. * 상기 하자보수 대상 및 내용 이외에 기 완료된 용역 또는 당해 용역과 관련 없는 과업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대가없는 과업수행 요구로 부적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이루이지 않을 때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국가계약법 제29조(지방계약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 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8조는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지양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 이전 활용할 수 있는 협의, 조정 등의 유연한 해결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안정적 계약이행을 위해 규정한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최종적 해결 방법으로 법률소송을 통한 법원의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성 저하, 계약당사자 간 과도한 긴장과 갈등 관계 형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으로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직간접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문별 해설

- 제1항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 제2항 :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이루이지 않더라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통하여 분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법에 따른 중재,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국제회의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계약이므로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을 적용토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 제4항 :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정상적인 용역 이행 의무를 계약상대자에 부과하여 분쟁 해소 이후 정상적인 용역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항 :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제1항~5항
적용 필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협의 및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을 발주한 OO기관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3회의 추가 전시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A기업은 30백만원의 추가비용과 25일의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발주기관은 신속한 용역이행을 위해 변경계약이 아닌 사후정산으로 진행할 것을 구두 통보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함.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3회의 전시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전체 과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20일을 초과하여 용역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과한 계약기간 20일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함.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이 변경계약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발주기관은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및 본 표준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div>
해석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 간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 간 단계적인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예시와 같이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정상적 계약 이행 및 완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유발되면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우선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공식적 조정절차인 「중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중재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상기 절차를 거쳐 중재합의 및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계적 분쟁 해결 절차 진행을 통해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함.

<p>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사례를 통해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변경계약 절차를 사후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및 본 표준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일 것임. • 계약상대자는 분쟁 처리 절차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됨. * 분쟁 해결 절차 진행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대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나 국제회의용역 등과 같은 일반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p>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113조(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이행 관련 이견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 간 계약이행 또는 계약조건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발생이 발생하였다며,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해결 노력 필요 - 1단계 :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 - 2단계 :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국가 또는 지방 계약법령에 따른 조정 * 당해 계약을 규율하는 상위 계약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우선 진행 검토 - 3단계 :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위한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	분쟁해결 과정에서 용역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단계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의 경우 계약이행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단, 계약상대자에 의한 용역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보 후 용역 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부록) 유권해석 모음집

부록 : 유권해석 모음집

- ① 계약금액 사후정산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적용
- ②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투입
- ③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④ 부당특약의 효력
- ⑤ 지식재산권의 귀속
- 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설정 및 기성대가 산정 방법
- ⑦ 선금 지급 의무
- ⑧ 사후정산에 따른 일반관리와 이윤의 조정
- ⑨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 ⑩ 용역 정지에 따른 변경계약

① 계약금액 사후정산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적용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계약문서)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공개 번호	1705240047	회신일자	2017-05-24
분류 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제목	향후 감사 등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사업의 특수성이나 여건변화가 없어도 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이 가능한지, 사후원가 정산대상이 직접경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사전에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p> <p>구체적으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개발시제품 등 설계서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정,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따라서, 어느 비목이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귀질의 만약 당해계약의 특수성도 없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전체 경비비목을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능한 설계내용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일부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비목에 대해 실제 투입물량으로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p>		

공개 번호	2001070023	회신일자	2020-01-07
분류 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제목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질의 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협상시 사후정산조건 추가에 관한 질의		
답변 내용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중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p> <p>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p> <p>그렇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투찰토록 한 경우에는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내용은 입찰공고시 공고한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p> <p>다만,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내용 등도 당초 공고내용, 계약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p> <p>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파기 대상도 아니며, 만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p>		

(부록) 유권해석 모음집

<p>공개 번호</p>	<p>1711060031</p>	<p>회신일자</p>	<p>2017-11-06</p>
<p>분류 제목</p>	<p>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p>		
<p>제목</p>	<p>발주자의 용역비 정산방법 변경에 대한 합당여부 질의</p>		
<p>질의 요지</p>	<p>장비사용료는 [1일사용료 x 수량 x 사용일수, 사용일수와 투입량은 변수. 1일사용료는 상수]로 되어있는데 감가상각 연수와 연계하여 1일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내용에 장비사용료에 대한 별도 조정조건이 없음)</p>		
<p>답변 내용</p>	<p>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따라서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없는한 산출내역서상 특정항목(귀질의 장비 사용료)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p> <p>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약 문서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어느 항목(귀질의 장비사용료)의 단가나 물량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 정산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공개 번호</p>	<p>1509140042</p>	<p>회신일자</p>	<p>2015-09-14</p>
<p>분류 제목</p>	<p>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p>		
<p>제목</p>	<p>총액제 확정계약 기간 중 특수조건변경 계약</p>		
<p>질의 요지</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사후정산 요건을 추가하는 특수조건의 효력</p>		
<p>답변 내용</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p> <p>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특수조건을 정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기획재정부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협조사항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 '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MICE용역*등에 있어서 일부 공공기관이 확정계약한 후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검토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전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후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MICE용역 불합리한 정산 사례')
 - * MICE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와 이벤트(Exhibition&Event)
4. 이에 따라, MICE용역계약을 비롯한 국가계약에서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업무 수행 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귀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도 동 사항을 전달,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협조사항>

- ① (사후정산 대상)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i)개산계약, ii)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후정산특수조건부 계약 포함), iii)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 ② (사전공개) 입찰 전(예: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등) 사후정산 여부, 정산대상 및 정산기준 및 절차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 * 입찰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조건이므로 사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

붙임 MICE용역 불합리한 정산 사례

사례 ① : 입찰 후 정산조건 적용 요구

- 입찰 전 입찰공고 등에서 정산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협상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 계약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요구 수용
 - 확정된 과업의 이행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을 검사·검수하고 대금지급까지 완료한 후 인터넷 최저가금액 또는 실제 구매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
-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후정산 특수조건부 계약 포함)은 입찰 전에 적용대상,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함

사례 ② : 부당한 이윤·일반관리비를 조정

- 사전에 확정이 가능한 과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또는 낙찰자 선정 시점에서 과업을 추가반영하면서 해당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비용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감액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
- ⇒ 발주기관이 추가과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③ : 용역 전체비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

- 입찰공고서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체 용역예산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 및 정산을 실시하여 사실상 개산계약으로 운영
- ⇒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각호*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그 외의 경우 적용 금지
-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사례 ④ : 대가 없는 과업수행(협찬) 요구

- 과업수행을 위해 실제 집행한 식음료비용을 계약업체가 협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식음료금액을 0원으로 정산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식음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서울의 도시 실현,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1. 재무과-31109(2017.6.21.)호 및 응답소 민원(2017.7.7.) 관련입니다.
2.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확정계약*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근거 없는 포괄적인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 : 계약 체결 전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통상적인 계약체결 방법

(※ 특히, **행사 용역에서 해당 사례 주로 발생**)

3. **확정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선금, 보험료 등)를 제외한 사업내역 전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계약상 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서사01-40,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정담당관)

계약관리관 김도전 계약총괄팀장 이명준 재무과장 07/10 신중우

참조자

시청 재무과-34599 ()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역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②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투입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 감독) •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 사항 이행) 		
공개 번호	1601050047	회신일자	2016-01-05
분류 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제목	(용역계약)제안요청서 평가 당시 제출한 인력과 착수인력이 다른 경우		
질의 요지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심의 당시 제출한 인력이 퇴직 등 사유로 과업착수시 제안서 인력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해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조(목적)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직원의 퇴직으로 당초 제출한 제안서대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의거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 후 발주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 대체한후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p> <p>그러나 과업수행 적격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p>		

공개 번호	1806250021	회신일자	2018-06-25
분류 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제목	용역투입인력을 과업지시서에 미달되게 제출		
질의 요지	과업내용서상 광구회계감사 수행경험이 있는 재직중 회계사 투입을 요구하였으나 수행경험을 증빙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인력충원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예외있음)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p>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귀질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로 판단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p>		

③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p>공개 번호</p>	<p>1802050038</p>	<p>회신일자</p>	<p>2018-02-05</p>
<p>분류 제목</p>	<p>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p>		
<p>제목</p>	<p>도급계약 인력산출근거표상 최저시급 미달시 견적단가 인상에 대한 질의</p>		
<p>질의 요지</p>	<p>용역계약 관련 인력산출 근거표상 최저시급이 미달된 상태이며 도급회사의 인상요구가(최저시급 인상 후 변경계약) 정당한지 여부</p>		
<p>답변 내용</p>	<p>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p> <p>따라서, 귀 질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 될 때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다만,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귀 질의처럼 동 물가변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 배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업무처리지침」 : 공공기관노사관계과-2188, 2017.12.05)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p> <p>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④ 부당특약의 효력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 제4조(계약문서)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	--

공개 번호	1612070013	회신일자	2016-12-07
분류 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제목	사업 투입인력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직원들의 참여율을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내용	<p>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 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p>		

⑤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련 조항	• 제19조(지식재산권,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공개 번호	1511260038	회신일자	2015-11-26
분류 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제목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요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발주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다고 명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p> <p>그러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p> <p><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p> <p>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발주기관 단독소유에 대한 계약특수조건은 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의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 단서의 범주에 의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p>		

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설정 및 기성대가 산정 방법

<p>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p>공개 번호</p>	<p>2104090013</p>	<p>회신일자</p>	<p>2021-04-09</p>
<p>분류 제목</p>	<p>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p>		
<p>제목</p>	<p>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대한 질의</p>		
<p>질의 요지</p>	<p>물품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질의</p>		
<p>답변 내용</p>	<p>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p> <p>상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p> <p>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p> <p>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국가계약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부당 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p> <p>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이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에서 해석·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⑦ 선금 지급 의무

관련 조항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공개 번호	1908220028	회신일자	2019-08-22
분류 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제목	용역 선금 요청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질의 요지	용역 선금 요청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내용	<p>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 예규 동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동조 제9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p>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그리고 선금의무지급률은 동 예규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선금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제3항에 의한 선금의무지급률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⑧ 사후정산에 따른 일반관리와 이윤의 조정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공개 번호	1708110038	회신일자	2017-08-11
분류 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제목	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정산과의 관계		
질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 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p> <p>한편,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p> <p>그리고, 귀질의 보험료 등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동일한 논리로 이러한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p> <p>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윤도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속성이 그 기준되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함께 연동되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연유하는 것입니다.</p>		

9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p>관련 조항</p>	<p>•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p>		
<p>공개 번호</p>	<p>1902220041</p>	<p>회신일자</p>	<p>2019-02-22</p>
<p>분류 제목</p>	<p>-</p>		
<p>제목</p>	<p>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해석</p>		
<p>질의 요지</p>	<p>재순환펌프의 전동기제작 납품관련 계약자의 하도급업체 파업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p>		
<p>답변 내용</p>	<p>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 것입니다.</p> <p>이때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p> <p>따라서 계약상대자 자체가 아닌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 등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다만, 이는 사전예측 가능성,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니, 귀질의 구체적인 경우 파업이나 태업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어도 대체 수단이 없었던 경우이거나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체 수단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p>		

공개 번호	2011160030	회신일자	2020-11-16
분류 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제목	코로나로 인한 용역계약 연장관련 문의		
질의 요지	코로나로 인해 용역이 중단된 경우 계약연장 가능여부 및 지연이자 지급여부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제18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4조에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p> <p>이때의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한편,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라면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항력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지급은 곤란해 보입니다.</p> <p>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산이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기기간 만큼 용역기간의 연장은 가능(연말까지도 가능)해 보이나, 용역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됩니다.</p>		

⑩ 용역 정지에 따른 변경계약

관련 조항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공개 번호	1503300038	회신일자	2015-03-30
분류 제목	-		
제목	설계용역 중지건입니다.		
질의 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용역 정지 후 변경계약 절차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중지)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제19조 제1,2항).</p> <p>참고로, 이처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9조 제3,4항).</p>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 2022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역재·복제할 수 없습니다.

발 간 월 : 2022년 12월

발 행 처 : 한국관광공사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033-738-3000

연구기관 : 한국조달연구원